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2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소년범죄 피해자의 권리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 학 과

송 태 영

소년범죄 피해자의 권리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Rights of Victims of
Juvenile Crimes

2022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 학 과

송 태 영

소년범죄 피해자의 권리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종 구

논문을 법학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 학 과

송 태 영

송태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재형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원상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종구 (인)

2021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目 次

ABSTRACT

제 1 장 서론	1
제1절 최근 소년범죄의 경향	1
1. 소년법의 변천사	2
2. 일반적인 소년사법절차	9
제2절 연구배경	11
1. 사법절차의 문제제기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 2 장 소년범죄 사건의 현황	15
제1절 통계로 본 소년범죄 사건	15
1. 소년범죄 사건 접수현황	15
2. 18세 이하 소년범죄와 범죄 발생비	16
3. 20세 이하 소년범죄 피해자 현황	18
제2절 소년범죄자의 재범	19
1. 소년범죄자의 재범률	19
2. 재범의 원인	20

제 3 장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한 외국의 입법례	22
제1절 미국의 입법례	22
1. 청소년법의 강화	22
2. 피해자 권리 운동	23
3. 피해자 진술권	26
제2절 일본의 입법례	28
1. 소년법 개정	28
2. 피해자 지원	35
제3절 뉴질랜드의 입법례	36
1. 소년사법 개혁	36
2. 회복적 사법의 태동	38
3. 가족집단회의의 운영	39
제4절 소 결	42
제 4 장 소년사법절차의 개선방안	44
제1절 피해자의 심리 기일 참석 허용 · 진술권 보장	44
1. 현행 규정	44
2. 개선방안	46
제2절 피해자의 기록의 열람 · 등사의 권리 허용	49
1. 현행 규정	49

2. 개선방안	51
제3절 피해자의 정보 접근과 제공 받을 권리 부여	53
1. 현행 규정	53
2. 개선방안	62
제4절 피해자 중심의 화해절차	64
1. 현행 규정	64
2. 개선방안	65
제5절 피해자의 항고권 인정	67
1. 현행 규정	67
2. 개선방안	71
제 5 장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72
제1절 소년범죄 피해자의 보호이념	72
1. 시대적 배경	72
2. 피해자에 대한 인식전환	73
제2절 범죄피해자보호법	75
1. 입법 배경	75
2. 피해자 보호관련 법규정	83
제3절 소년범죄 피해자보호법	89
1. 소년피해자의 권리보호	89
2. 입법의 필요성	90

제4절 소 결	95
제 6 장 결 론	98
참고 문헌	101

【표 차례】

- <표1> 소년보호사건의 사법절차(2015~2020)
- <표2> 소년보호사건의 접수 현황(2010~2019)
- <표3> 전체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4~2019)
- <표4>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의 발생비 추이(2010~2019)
- <표5> 2019년 형법범계 피해자 연령별 현황
- <표6> 소년보호관찰사건의 근거 법률 및 처분유형별 재범
(2014~2020)
- <표7> 뉴질랜드 소년사건처리절차 흐름도

ABSTRACT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Rights of Victims of Juvenile Crimes

Song, Tea-Young

advisor : Prof. Kim, Jong Goo, Ph.D.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Currently,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has an asymmetric structure centered on the juvenile perpetrators rather than guaranteeing the victims' legitimate rights in the judicial process under the guise of the realization of the ideology of 'national kinship' and 'human rights treatment'. Although juvenile crimes have recently become ferocious and brutal, the measures to protect victims are insufficien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juvenile crimes, juvenile justice procedures and policies centered on perpetrators are not functioning properly to reduce or prevent juvenile crimes, and rather, they are mass-producing recidivism.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ere victims' rights are strengthened, most federal states have amended laws emphasizing 'rehabilitation' and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for juvenile crimes emphasizing 'punishment' and 'public protection'. Similarly, victims of juvenile crimes, like victims of adult crimes, are broadly recognizing the rights of victims by applying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victims of crime to protect victims' witness

es. In particular, it guarantees the victim's right to make an active statement, which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entencing of the trial. In Japan, the 「Juvenile Act」 was amended to strengthen the status of victims of juvenile crimes, the scope of reading and copying of records of victims, etc. was expanded, the number of people who could listen to opinions by request of victims, etc. A notice system after judgment is in operation. In New Zealand, a family group conference, a victim-centered restorative judicial procedure led by a professional private institution, is being operated at an appropriate time to induce reconciliation that both victims and perpetrators can sympathize with. The following are the ways to improve the juvenile justice procedure to strengthen the rights of victims of juvenile crimes in Korea by introducing positive aspects to these foreign legislative practices.

First, although there are provisions for allowing victims to attend the hearing and the right to make a statement, the juvenile law has no sense of efficacy due to various special rules.

Second, although there is a provision for perusal and copying of the victim's protection case record, it has been improved to allow very limited permission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juvenile division judge. It should be possible to read and copy, and in addition to psychological records related to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it should be possible to read and copy records related to flight facts. In addition, I believe that the number of persons who can peruse records and evidence after the start of the hearing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not only assistants, but also victims, legal representatives, and defense counsel.

Third, by improving the blocking of access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the perpetrators of juvenile crime victims, the victim or his/her legal representative is notified of case-related information, whether or not

a hearing has started, the date and place of the hearing, and the outcome of the judgment and treatment after the result. i think you should

Fourth, in the case of juvenile protection cas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unilateral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procedure of the family court judge by improving the fact that th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is carried out only at the court level and that the reconciliation procedure is proceeded by the juvenile deputy judge's arbitrary decision. To this end, a system was newly established to proceed with the reconciliation procedure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of the police and prosecutors, and during the trial, the reconciliation procedure should be conducted at the request of the victim or the decision of the family court judge. I believe that it should be entrusted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Fifth, in the case of family court hearings, the right to appeal, which is a means of objection, must be recognized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victim's right to testify by improving the fact that the victim of juvenile crime has the status of the right to appeal, but the juvenile does not have the right to appeal. I think it is appropriate to give the victim the right to appeal against the decision not to initiate the hearing, the decision not to dispose of it, or the decision to cancel the protective disposition.

Sixth, it is considered that the 「Juvenil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should be enacted to enable protection, support, and rescue of juvenile crime victims like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which is the basi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adult crime victims.

제 1 장 서 론

제1절 최근 소년범죄의 경향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수위가 낮은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악용하는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형사책임이 없는 촉법소년(10세~13세)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수법과 유형 또한 성인범죄를 능가하고 있다. 이런 촉법소년의 범죄에 대해 유승민 전의원은 “형법을 개정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하겠다. 또 소년법 폐지와 보호소년법을 제정하겠다”는 발언을 했으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학교폭력, 성폭력, 기타 중범죄의 경우 만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 형법 제9조 규정의 예외를 두어 만10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¹⁾ 소년법에 대한 강한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또한 가세해 법무부는 2018년 제1차 소년비행 예방기본계획(2019~2023)²⁾을 발표한 바 있다. 그렇지만 2018년 UN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문제와 관련 현행 14세인 한국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지 말 것과 오히려 상향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역시 “소년법을 엄벌하는게 소년범죄 예방효과에 효과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소년범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재범률, 특히 단기간 재범률의 증가이며, 소년범죄 예방정책은 청소년이 재비행에 노출되는 환경을 줄이는 쪽으로 종합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도 소년법 개정이나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출 수 있다는 대한민국의 정책안에 우려를 표한다. 대로 유지해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³⁾ 이러한 소년범죄자의 처벌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은 활발히 표명되고

1) 김소영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655664>, 노컷뉴스(2021), 2021. 11. 17. 검색

2) 법무부, 「2019~2023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수립」, 2018.

있지만 반면에 소년범죄피해자의 지위와 권리, 보호에 대한 국가기관의 정책, 그리고 국회입법, 국민들의 관심, 국제기관의 입장표명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소년사법절차는 국친사상이라는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소년법에 대한 제재의 성격과 함께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양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한 N번방사건⁴⁾과 부산 여중생 집단성폭행⁵⁾, 서울 관악산 도래 집단폭행⁶⁾, 2018년 11월 경 인천중학생추락사⁷⁾, 친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 사건⁸⁾등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과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잔인한 양상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소년사법절차는 여전히 가해자의 제재보다는 인권적 처우라는 미명아래 피해자의 사법절차상의 정당한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2000년대 우리나라에 소개된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제도가 도입되어 소년보호사건에도 회복적사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도되었지만 현실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진정성있는 화해절차를 통한 법감정의 해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분법적 요소의 균형을 실천하는 것보다는 가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우선권을 두는 소년사법절차는 이런 잔혹한 소년범죄의 영향으로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소년법 폐지에 대한 검색어가 6,322건의 결과를 초래했다.⁹⁾

1. 소년법의 변천사

소년법의 변천사를 보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소년의 범죄 등에 대하여 특별한 조처를 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42년 2월 「조선소년령」에서 이러한

3) 허시언기자,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28>. 시빅뉴스(2021), 2021. 11. 26. 검색

4) 서민선·윤준호 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317266>, 노컷뉴스(2020). 2021. 11. 17. 검색.

5) 박종석 기자, <http://www.nocutnews.co.kr/news/1028429?c1=191&c2=193>, 노컷뉴스(2013) 2021. 11. 17. 검색.

6) 성서호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81130135300004>, 연합뉴스(2018), 2021. 11. 17. 검색.

7) 손현규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3050751065>, 연합뉴스(2018), 2021. 11. 17. 검색.

8) 김남명기자, <https://news.v.daum.net/v/20210831183801764>, 국민일보(2021), 2021. 11. 17. 검색.

9) 청와대,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search>). 2021.

조치를 하였고, 이 영은 1958년 이 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는바, 「소년법」은 1958년 7월 24일(법률 제489호) 제정되었으며, 신규제정 이유는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었다. 구체적 신규제정 내용으로 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20세 미만의 자로 정하였으며,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이 행위자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하고, 해당사건은 지방법원소년부에 속하도록 하여 그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소년부단독판사가 행하도록 하였고,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자는 법관 또는 검사로부터 송치된 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경찰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부터 송치된 자로 하였다. 소년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년부에 소년보호관을 두었으며, 소년부판사는 소년보호관에 대하여 본인·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년보호관·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년부판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모든 행정기관·학교·병원 기타 공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와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보호자에게 위탁, 사원·교회 기타 소년보호단체의 감호에 의 위탁, 병원 기타 요양소에 의 위탁, 감화원에 의 송치, 소년원에 의 송치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1963년 7월 31일(법률 제1376호)에 일부 개정되었으며, 그 개정이유는 가정법원의 발족을 계기로 소년심리에 관한 모든 절차를 보다 국가후견인적인 이론의 토대에서 서게 하고 소년보호를 교육적이고 과학적으로 발전시켜 처우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사회와 가정 및 국가기관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구체적 개정내용은 소년보호사건의 관할법원을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로 하였으며, 소년부의 보호사건대상자는 죄를 범한 소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범죄성이 있는 자등과 교제하는 등의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 등으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나 학교장·사회복지시

설의 장은 소년부에 직접 통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호처분의 종류에 보호관찰 처분을 추가하고, 보호관찰처분은 병원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처분 등의 경우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인인 자가 고의로 연령을 허위 진술하여 보호처분 또는 소년형사처분을 받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1977년 12월 31일(법률 제3047호)에 일부 개정되었으며, 개정이유는 소년감별소가 신설됨에 따라 사건을 조사·심리하는 법원소년부로 하여금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와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고, 판사가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할 때에는 소년을 소년감별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18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환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구체적 개정내용은 법원소년부는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와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고 사건을 조사·심리할 때에는 소년의 보호에 관하여 소년감별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20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환형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18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성년과 같이 환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호처분에 위탁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위탁기간을 미구금일수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1988년 12월 31일(법률 제4057호)에 전부개정이 되었으며, 개정이유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교화를 위하여 보호처분을 다양화하고, 보호관찰제도를 활성화하며, 소년심판절차에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소년사건 처리절차상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이었다. 구체적 개정내용은 조사를 받는 소년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개시 시 심판에 부할 사유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보호처분 중 보호자감호위탁처분·감화원 송치처분을 폐지하고, 보호관찰을 활성화하여 보호관찰관에 의한 단기보호관찰과 보호관찰의 두 종류로 세분하며, 보호관찰기간 중 16세 이상 소년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를 단기소년원 송치와 소년원송치로 구분하고, 단기소년원 송치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사형·무기형 금지연령을 16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고, 형사사건 외에 보호사건으로 조사·심리 중인 소년에 대하여도 보도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1995년 1월 5일(법률 제4929호)로 타법 개정되었으며, 개정이유는 기관명칭인

“소년감별소”의 “감별”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동물의 암수, 예술품의 진위를 가린다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어 기관명칭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개정하려는 것이었다. 구체적 개정내용은 “소년감별소”명칭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변경하였다.

2007년 12월 21일(법률 제8722호)에 일부 개정되었으며, 개정이유는 최근 청소년 인구의 감소에 따라 소년사건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의 재범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어 처벌 위주에서 교화·선도 중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 구체적 개정내용은 법의 적용 연령 및 촉법소년(觸法少年)·우범소년(虞犯少年)의 연령 인하(법 제2조 및 제4조제1항 제2호·제3호)에 관한 것으로 청소년의 성숙정도,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 만 19세는 대학생인 점 등에 비추어 법의 적용 상한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고, 소년범 연령이 낮아질 뿐 아니라 범행내용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여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하향 연령을 낮출 필요성을 제기하고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연령을 현해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추었다. 이것으로 인해 만 19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고, 현재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법적조치를 받지 아니하는 만 10세와 만 11세의 소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교화·선도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소년보호사건에 국선보조인제도 도입(법 제17조의2 신설)에 관한 것으로 현행 소년 보호사건 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의 국선변호인제도와 같은 규정이 없어 소년범의 인권보장에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위탁소년에 대하여는 필수적으로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소년이 아니더라도 국선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내실화 및 보호처분의 기간 조정(법 제32조, 법 제32조의2 신설, 법 제33조)에 관한 것으로 현행법은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지 못

하여 소년의 품행 교정을 위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보호처분의 실효성 제고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보호처분의 기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관찰에만 병합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하여 활용을 확대하고,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처분을 신설하며, 인성교육 위주의 대안교육, 청소년단체 상담·교육, 외출제한명령, 보호자 교육 명령제도 등을 도입하고,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시간 및 단기보호관찰기간을 각각 연장하며,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의 수용 상한 기간을 명문화하였다. 검사의 처분결정 전 사전 조사제도 도입(법 제49조의2 신설)에 관한 것으로 수사단계에서 소년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의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검사가 소년사건을 처리할 때에 분류심사관,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가 조사한 소년의 품행·환경 등 분석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처분결정 전 사전 조사제’를 도입하여, 소년사건의 처리의 전문성 향상 및 내실화로 소년범의 교정·교화를 도모하였다.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법 제49조의3)에 관한 것으로 소년범에 대하여 사법절차 회부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하면서 선도·보호를 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실무상 행하여지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근거를 소년법에 명문화함과 동시에 선도의 내용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선도, 소년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 등으로 다양화하였으며,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소년범에 대하여 사법절차 회부 및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하면서 선도·보호를 통하여 비행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비행 예방정책 기본 규정 신설(법 제67조의2 신설)에 관한 것으로 소년사건의 사후처리 절차만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은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법의 이념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청소년 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종합적인 비행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조사·연구 및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비행예방 대책 마련으로 소년 비행예방 기능이 강화를 도모했다.

2014년 12월 30일(법률 제12890호)에 일부 개정되었으며, 개정이유는 현행 법률은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으로서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으나,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재수위가 다소 낮은 측면이 있고, 이에 유사한 처분과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을 맞추고,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이행률을 높여 입법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이었다.

2015년 12월 1일(법률 제13524조)에 일부 개정되었으며, 개정이유는 현행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는 기본적으로는 소년의 개선과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형벌과는 차이점이 존재하나, 결국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형벌인 구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형벌인 구금은 미결구금일수가 통산되는 것과는 달리,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에는 항고 결과 송치기간이 감형되는 경우에도 형사절차상의 형벌인 구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판결에 따른 소년원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집행과정상 결국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 이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에도 원판결에 따른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년의 기본적 인권이 더욱 보장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 9월 18일(법률 제15757호)에 일부 개정되었으며, 개정이유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면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특례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소년법」 제67조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7헌가7, 2018. 1. 25.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자격에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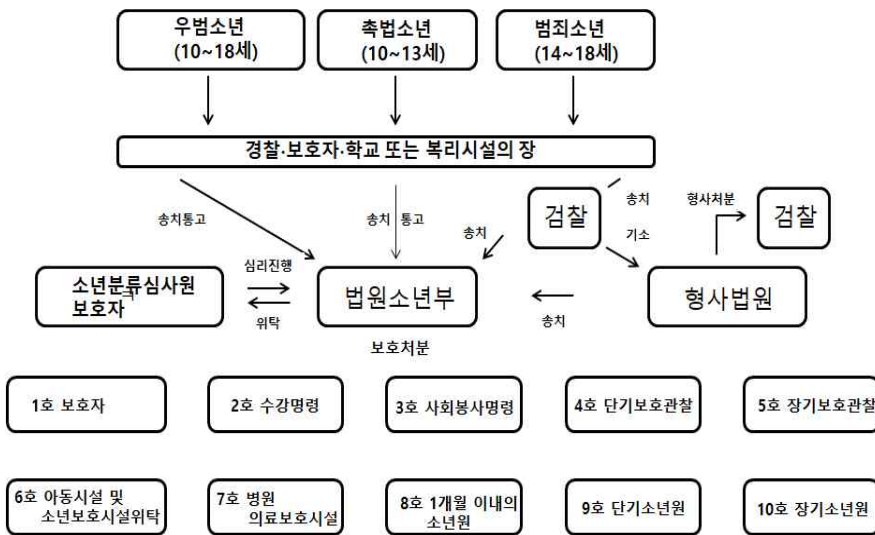
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의 선고로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되,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2020년 10월 20일(법률 제17505호)에 타법 개정되었으며, 개정이유는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수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소년 등이 공동생활 외에 1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 및 징계사항을 심의하는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두며, 의료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에서 출원(出院)한 보호소년 등에 대한 외래진료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년원에서 퇴원한 소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근신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 등에게도 매주 1회 이상의 체육활동을 보장하여 보호소년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¹⁰⁾ 소년법의 변천사에서 법구성의 주된 내용은 심신의 발육이 미숙한 소년이 반사회성 행동을 할 경우 그에 대한 보호를 하고, 성인과 같은 형사처분의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으며,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한 소년법의 지위와 권리 그리고 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반면에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위와 권리를 인정한 입법은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소년법」 제25조의2에 피해자진술권을 신설한 바 있다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1.

2. 일반적인 소년사법절차

<표 1>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¹¹⁾



소년보호사건의 사법절차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촉범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조사단계 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조사·심리과정을 통해 처분이 결정된다. 범죄소년의 경우 경찰수사단계에서 사건처리는 일반사건과 유사하나(형사소송법 제196조 제4항), 가정법원이나 검찰 송치 단계부터는 처분결정에 따라 사건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먼저 검사는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공소를 제기하거나(동법 제246조, 제448조)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불기소처분(동법 제247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을 할 수 있다.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검사는 사건을 관할하는

11)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https://www.cppb.go.kr>), 2021.

소년부에 송치하며(소년법 제49조), 해당 사건의 사법절차는 소년부에서 계속된다. 공소제기를 하더라도 형사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며(동법 제50조), 해당사건의 사법절차는 소년부에 계속된다. 피의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거나 송치된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소년부는 이를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동법 제7조 제1항, 제49조 제2항). 가정법원 판사는 「소년법」 제12조·제18조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을 하여 가해소년의 신상관계, 가정·환경·심리적 측면, 행동관찰 등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비행원인을 규명하고 처우에 대한 의견을 분류심사관을 통해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년법」 49조의2에 따라 결정전조사를 제도는 검사가 의뢰한 피의소년에 대한 신상관계, 환경 및 심리적 측면 등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검찰청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소년보호사건의 일반적인 소년사법절차는 가해소년의 다양한 처우가 가능하도록 경찰단계, 검찰단계, 가정법원, 형사법원의 다양한 절차가 준비되어 있다. 촉법소년의 경우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와 같은 중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다고 해도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지 않아 소년범죄의 심각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13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것과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은 높았지만 여전히 소년범죄피해자에 대한 가해소년의 사과나 화해절차, 책임의식을 부과하는 사법절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낮다. 피해소년의 경우 경찰단계, 검찰단계에서 적극적인 화해나 합의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으며, 피해에 대한 조사 외에 심리적 충격에 대한 피해영향진술을 할 기회가 없어 그에 대한 보호와 치료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해자 중심의 가정법원심리에서 형사사법절차에서 인정하는 기본적인 피해자 권리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피해에 대한 적합한 처분의 의견이나 진술, 처분결과에 대한 정보마저도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처분결정, 심리불개시 결정, 불처분결정, 보호처분취소와 같은 가정법원심리의 결과에 대한 통보제도가 없기 때문에 피해소년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소년의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우연히 처분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더라도 피해소년 측에는 항고 및 항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복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다. 이런 불균형적인 사법절차는 공정한 법의 적용이라는 신뢰, 피해에 적합한 처분을 기대하는 피해소년에게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해에 대한 깊은 반성과 사과, 피해소년이 납득할 수 있는 화해절차, 적절한 배상과 사회적 책임부과라는 단계 없이 다시 사회로 복귀한 소년범들은 다시 재범을 하는 사례가 많다. 그렇지만 여전히 소년사법절차는 가해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갱생이라는 목적에 맹종하여 피해소년이 받은 피해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절차개선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배경

1. 사법절차에 대한 문제제기

소년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법은 소년보호주의에 입각한 보호처분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확신하고 시행되었으며, 「소년법」은 1958년 7월 24일 (법률 제489호)로 제정되어 1963년 7월, 1977년 12월, 1988년 12월, 1995년 1월, 2008년 1월과 6월에 부분적인 개정은 있었지만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소년보호주의이념에 따라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목표를 두고 운영되고 있는 소년사법절차의 보호처분을 경시하는 소년범죄자의 범죄가 흉포화되고 잔혹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소년에 대한 엄벌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경우는 많지만 범죄로 발생한 소년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물적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낮은 편이다.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과 달리 소년법에 적용을 받는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가해소년과 피해소년의 소년사법절차상의 지위와 권리의 균형에 대해 법조계, 학계의 관심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청소년 범죄의 잔혹성과 흉포화에 대해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엄벌주의와 처벌강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의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이목을 불러 일으켰지만, 피해자인 청소년의 보호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사회적 관심은 미약했다. 소년범죄의 우발성과 가정환경의 영향, 뇌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해자인 청소년의 교화를 위해 열띤 토론이 개최되고 있지만 반대로 피해소년과 피해자 측의 보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들과 법안발의, 학계의 관심이 다소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소년범죄의 사법절차는 가정법원의 소년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판사의 단독적인 결정에 의해 보호처분을 결정하고 있으며, 가해자인 범죄소년은 국선변호인이나 사설변호사의 변호를 받지만, 피해자 측은 검사나 변호인, 법정대리인이 없이 진행되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항고제도에 관한 규정인 소년법 제43조는 항고 사유로 첫째, 해당 결정이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둘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가해소년이 항고를 할 수 있지만 피해자 측 소년은 항고를 할 수 없는 불균형적인 구조인 것이다. 소년법은 2007년 개정을 통하여 법 제25조의2의 “피해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피해자 등의 진술권”, 법 제25조의3 “화해권고제도”를 규정하였지만, 피해자가 자유롭게 보호소년의 심리기일에 출석하거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등사하게 하는 것은 소년법의 목적인 가해자인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 인권 친화적 처분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반면에 소년보호사건의 결과 발생한 소년범죄 피해자의 사법절차상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심리의 기일참석·진술권, 심리기록의 열람·등사, 정보접근과 제공, 화해절차, 항고권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소년범죄 피해자는 부여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소년범죄의 경우 그 범죄의 대상인 피해자가 같은 청소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폭력사건과 청소년간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가해자가 소년일 경우 피해자는 사실상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정보공개가 되지 않으며, 심지어 가정법원 판사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은 절차가 부재하다.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되거나 부재하다는 것에 범죄결과로 인한 또 한 번의 좌절과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이라는 2차 가해를 주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논문에서는 최근의 소년범죄의 경향을 통해 가해자의 제재보다는 인권적 처우에 치우친 소년사법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소년법의 변천사를 검토하여 소년보호주의에 근거하여 피해소년보다는 가해소년의 보호와 갱생을 중심으로 보호처분을 한 결과 보호처분의 경시, 청소년의 범죄의 심각화를 가져왔으며, 여전히 피해소년에 대한 보호에는 관심이 미약한 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사법절차의 흐름을 설명하고 소년법의 입각한 소년사법절차의 가해소년 중심의 개괄적인 내용을 전개하였다.

제2장에서 소년범죄 현황에서 소년범죄 증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자료인 소년보호사건의 접수 현황,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인 전체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를 분석을 통해 소년보호주의 입각하여 추진되었던 소년범죄예방정책과 가해자 중심의 소년사법절차의 운영이 소년범죄사건의 증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였으며, 소년범죄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자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 자료인 소년범죄사건의 소년피해자의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소년범죄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소년범죄사건의 재범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자료인 소년보호관찰 사건의 근거 법률 및 처분 유형별 재범률 자료를 분석하여 사법절차 단계에서 재비행억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소년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한 외국의 입법례로 미국의 각주의 피해자의 권리와 의무의 규정·성인법정의 피해자 권리와 소년법정 피해자 권리의 밀접성과 권리 통합·증인보호·피해자 진술권에 대한 논쟁을 중심을 전개했으며, 일본의 입법례의 경우 2000년 소년법개정·2008년 소년법개정·소년심판 후의 통지 제도를 중심으로 전개했고, 뉴질랜드의 입법례는 소년사법의 개혁 배경·회복적 사법의 태동으로 도입된 가족집단회의를 소개하였으며, 소결에서 미국, 일본,

뉴질랜드의 피해자 권리를 강화한 입법례와 우리나라 「소년법」과 비교하여 도입에 필요성이 있는 제도에 대해서 전개했다.

제4장에서는 불균형적인 사법절차로 첫째, 피해자의 심리 기일 참석 허용, 진술권에서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만 가정법원 판사의 판단에 따라 진술의 기회를 제한하는 점과 방청의 기회마저 부과하지 않은 심리비공개 원칙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입법론에서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을 제시하고 추가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보호소년의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고 피해자의 보호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규정은 존재하지만 소년부판사의 결정에 따라 아주 제한적으로 허가하여 피해자의 불복권과 방어권의 차별을 문제를 지적하고 입법론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소년범죄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정보 접근과 제공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피해자의 생명권, 알권리, 재판절차진술권의 근거에서 정보제공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넷째,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화해권고의 단계가 법원 단계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소년부판사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화해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입법론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다섯째, 가정법원심리의 경우 가해소년에게는 항고권의 지위가 있지만 소년범죄피해자에게는 없다는 불균형적인 사법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판례, 20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해자권리,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피해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소개하고 소년사법절차에 피해자 항고권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제5장 소년범죄피해자보호에서는 보호의 이념·피해자의 인식전환·범죄피해자보호법의 입법배경·피해자 보호관련 법규정, 「소년범죄 피해자보호법」의 필요성을 전개했고, 소결에서는 소년범죄피해자 성인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입법된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같이 소년범죄피해자의 지위와 권리, 보호와 치료, 재활을 위해 「소년범죄 피해자보호법」의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제 2 장 소년범죄사건의 현황

제1절 통계로 본 소년범죄 사건

1. 소년범죄사건 접수 현황

<표 1> 소년범죄사건 접수 현황¹²⁾

(단위 : 건)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접수 (건)	34,075	33,738	34,110	33,301	36,576	38,590	210,390

<표 1>은 최근 6년간 법원의 소년보호사건의 접수현황을 보면 전체 소송 건은 210,390건이며, 2020년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8,590건으로 검찰 송치가 64.5%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찰소장 송치, 타소년부에서 이송 등 순이다. 중요죄명은 절도가 전체의 3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순이다. 최근 6년간 접수내역을 볼 때 소년보호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의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성인과 동일한 흉악하고 잔혹한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년범죄자의 경우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되어 소년보호이념에 입각한 인권친화적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호처분의 수위는 낮은 편이며, 다양한 처분에 대한 선택지가 있어 최종 가정법원의 심판에서는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 시설내 처우인 장기 2년, 단기 6개월의 경미한 처분이 결정된다. 또한 소년범죄자의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가

12) 대법원, 「사법연감」, 2021.

평배하여 경찰수사단계, 검찰수사단계, 가정법원, 소년원, 단기보호시설, 보호관찰소 관계자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재범의 경우 보호관찰처분 기간 중에 재범을 하거나 소년원 재원 중에도 형법이나 폭력행위등 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이 되거나 소년법을 위반하여 중한 보호처분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인 소년은 범죄의 결과에 따른 처분이 경하다는 이유와 가해자 중심의 소년사법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상황이 소년범죄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지는 않은지 상기시키는 유의미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2. 18세 이하 소년범죄와 범죄 발생비

<표2> 전체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0~2019)¹³⁾
(단위 : 명)

연 도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	계
2010	101,596	346,228	418,023	521,655	279,988	97,256	1,764,746
2011	100,032	317,562	387,916	501,839	299,009	105,329	1,711,687
2012	104,780	318,770	389,563	515,006	379,735	135,435	1,843,289
2013	88,731	325,454	395,825	510,441	393,956	145,290	1,859,697
2014	77,594	306,597	381,442	501,527	418,590	165,400	1,685,750
2015	71,035	324,976	376,218	496,000	435,511	185,219	1,703,740
2016	76,000	341,896	393,251	498,953	454,454	209,101	1,764,554
2017	72,759	318,645	345,590	441,295	424,809	215,139	1,603,098
2018	66,142	293,734	308,902	400,370	407,348	227,590	1,476,496
2019	66,247	297,445	300,789	388,899	413,869	256,250	1,723,499

<표2>는 2019년 전체범죄를 대상으로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를 나타낸 내역이다. 전체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8세 이하인 소년범죄는 2014년 4.2%, 2015년 3.8%, 2016년 3.9%, 2017년 4.0%, 2018년 3.9%로 감소하다가 2019년 3.8%로 약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소년범죄사건의 잔혹성과 심각한 피해정도를 볼 때 이러한 소년범죄의 감소추세를 근거로 한 범죄예방정책수립과 소년사법절차 운영은 비행 억제기능과 재범예방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

13) 대검찰청, 「범죄분석」, 2020.

다. 18세 이하의 소년의 잔혹한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성인도 있겠지만 같은 소년인 경우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범죄의 감소라는 통계자료에 의존하여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근까지 대검찰청, 대법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등과 같은 국가기관의 통계자료에는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점은 정책의 방향이 가해소년의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소년범죄 발생비의 감소 추세에 대한 오류 중 하나는 청소년 인구에 급격한 감소와 범죄감소에 대한 비교 법적 통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소년범죄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준비된다면 입법 개선방안이나 정책수립에 유의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3>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의 발생비 추이(2010~2019)¹⁴⁾

(단위 : 발생비, %)

연 도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2010	400.7	-	33.7	-	250.5	-	150.9	-
2011	403.0	0.6	38.1	13.1	265.2	5.8	136.3	-9.7
2012	442.4	10.4	34.7	3.0	310.0	23.7	115.1	-23.7
2013	430.9	7.6	34.4	2.1	215.4	-14.0	96.2	36.3
2014	367.4	-8.3	32.0	-5.0	196.0	-21.8	93.7	37.9
2015	332.9	-16	28.2	16.4	181.4	27.6	89.4	-40.8
2016	352.9	-11.9	35.7	5.9	207.7	-17.1	99.4	34.1
2017	319.3	20.3	38.1	13.0	231.2	7.7	105.8	29.9
2018	300.6	-25.0	39.8	18.2	224.0	-10.6	86.7	-42.6
2019	327.6	-18.2	43.2	28.2	219.4	-12.4	88.0	-41.7

<표3> 10년간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보면, 소년재산 범죄의 발생비는 2010년 소년인구 10만 명당 400.7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442.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9년에는 327.6건 발생하였다. 지난 10년간 소년 재산범죄의 발생비는 18.2% 감소하였다. 소년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2010년 소년인구 10만 명당 33.7건에서 2011년 38.1건으로 증가한 후 4년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9

14) 대검찰청, 「범죄분석」, 2020.

년에는 43.2건 발생하였다. 지난 10년간 소년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28.2% 증가하였다. 소년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2010년 소년인구 10만 명당 250.5건에서 증가하여 2012년 310.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3년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6년부터 다소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9년 219.4건 발생하였다. 지난 10년간 소년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12.4% 감소하였다. 소년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2010년 소년인구 10만 명당 150.9건에서 대체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는 88.0건이 발생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10년간 소년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41.7% 감소하였다. 4가지 범죄군 중에서 소년범죄 발생비는 가장 높은 범죄군 재산범죄이며, 그 다음은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흉악) 순이었다. 2019년 강력범죄(흉악)의 소년범죄 발생비는 다른 범죄군에 비하여 가장 낮았지만, 다른 범죄군은 지난 10년간 증감률이 감소한 반면 강력범죄(흉악)는 28.2% 증가하였다. 이 통계자료를 볼 때 흉악범죄로 인한 소년범죄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볼 수 있으며, 피해자의 보호와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3. 20세 이하 소년범죄 피해자 현황

< 표4 > 2019년 형법범계 피해자 연령별 현황¹⁵⁾

(단위 : 건(발생))

연령	계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60세 이하	60세 초과	미상
건(발생)	1,767,684	97,547 (5.4%)	222,115 (12.6%)	217,890 (12.3%)	240,088 (13.6%)	234,332 (13.8%)	176,633 (10%)	555,895

<표3>에서 보면 2018년 내 소년이 포함된 20세 이하의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 1,767,684 건 중 97,547건으로 5.4%를 차지하고 있다. 소년범죄의 피해자인 것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20세 이하의 소년피해자인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그렇지만 이 통계자료에는 소년사법절차에서 생성된 피해사건의 발

15) 대검찰청, 「범죄분석」, 2020. 재구성

생, 접수, 피해자 진술권의 신청, 화해권고, 형사조정, 형사피해자 지원 및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년피해자의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소년사법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소년범죄자의 재범률

1. 소년범죄자의 재범률

< 표5 > 소년보호관찰사건의 근거 법률 및 처분유형별 재범률¹⁶⁾

(단위 : %)

근거법률(처분유형)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0.6	11.7	12.3	12.8	12.3	12.8	13.5
형법		11.2	14.2	13.4	14.0	13.2	16.0	13.7
소년법	소계	11.5	12.7	13.4	13.9	13.1	13.3	13.9
	단기보호관찰	9.2	10.1	11.4	12.2	11.2	11.0	11.9
	장기보호관찰	13.2	14.9	15.3	15.4	14.7	14.9	15.2
보호관찰법(임시퇴원)		13.5	14.6	15.1	15	14.7	16.1	17.1
성폭력처벌법		7.2	1.4	1.8	3.4	6.0	3.5	0.0
가정폭력처벌법		13.3	9.5	5.6	3.3	8.0	4.9	0.0
성매매처벌법		0.0	25.0	-	-	-	14.3	50.0
보호관찰소 선도	소계	5.1	5.2	5.3	6.2	5.4	6.1	5.8
	선도위탁 1급	11.5	10.1	12.5	13	3.1	5.8	9.1
위탁규정	선도위탁 2급	5.0	5.1	5.1	6.1	5.5	6.1	5.6
청소년성보호법		6.1	4.8	1.7	6.2	7.5	3.6	12.5

소년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을 보면 최근 7년간 소년사건의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은 2014년 10.6%, 2015년 11.7%를 기록한 이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2%, 2020년에는 13.5%를 기록하였다. 2020년 소년보호관찰 사건의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률을 근거 법률(처분유형)에 따라 구분하며, 보호관찰법(임시퇴원)이 17.1%, 형법이 13.7%로 나타났다. 이어서 소년법(단기 보호관찰)이 11.9%, 소년법(장기 보호관찰)이 15.2%이었고,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선도위탁 1급) 9.1%, 보호관찰

16) 법무부,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2021.

소 선도위탁 규정(선도위탁 2급) 5.6% 등이었다. 2020년 보호관찰기간 중에 재범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3,484명에 대한 보호관찰 개시 이후 재범 발생 시까지의 경과기관을 분석한 결과, 보호관찰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범한 경우가 전체 재범사건의 36.5%이었고, 3개월을 초과하여 6개월 이내에게 재범한 경우가 25%, 6개월을 초과하여 1년 이내에게 재범한 경우가 27% 등이었다.¹⁷⁾

2. 재범의 원인

소년법에 규정된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절차를 보면,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비행청소년을 발견하고 소년법원에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3항), 경찰서장은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하면 직접 소년법원에 송치해야 하고(동법 제4조 제2항), 범죄소년을 검거하면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54조). 검사와 형사법원은 소년사건이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년법원에 송치하고(동법 제49조 1항, 제50조), 그 외의 경우에 일반형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소년법원은 통고, 송치된 소년보호사건을 조사, 심리하여 대상자가 성인으로 판명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형사법원으로 이송하여 형사절차로 돌려보낼 수 있지만(동법 제7조, 제49조 2항, 제51조), 그 외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절차를 진행하여 심리불개시(동법 제19조), 불처분(동법 제29조) 또는 보호처분(동법 제32조)으로 처리한다. 소년법원이 보호처분결정을 한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변경(동법 제37조)과 취소(동법 제38조, 39, 40조) 및 항고(동법 제43조)와 재항고(동법 제47조)가 가능하다.¹⁸⁾ 범죄소년의 경우 경찰수사단계에서 사건처리는 일반사건과 유사하나(형사소송법 제196조 제4항), 가정법원이나 검찰 송치 단계부터는 처분결정에 따라 사건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먼저 검사는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공소를 제기하거나(동법 제246

1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2021.

18) 이영란, “소년사법절차에 관한 연구 -소년경찰의 다이버전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15호, 2010, 10~11면.

조, 제448조)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불기소처분(동법 제247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을 할 수 있다.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검사는 사건을 관할하는 소년부에 송치하며(소년법 제49조), 해당 사건의 사법절차는 소년부에서 계속된다. 공소제기를 하더라도 형사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며(동법 제50조), 해당사건의 사법절차는 소년부에 계속된다. 피의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거나 송치된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소년부는 이를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동법 제7조 제1항, 제49조 제2항).

가정법원에서는 제32조¹⁹⁾에 따라 가해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처분결정을 하지만 <표4> 소년보호관찰사건의 근거 법률 및 처분유형별 재범률 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처분결정으로 사회 내 처우인 장기 및 단기 보호

19)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2. 수감명령
 - 3. 사회봉사명령
 -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 단기 소년원 송치
 - 10. 장기 소년원 송치
-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 1.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처분
 - 2.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처분
 - 3. 제1항제4호·제6호 처분
 - 4. 제1항제5호·제6호 처분
 - 5. 제1항제5호·제8호 처분
-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관찰을 이행하거나 시설 내 처우(소년원, 위탁시설, 청소년쉼터)에서 출원한 후
 부과된 보호관찰을 이행하던 기간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비행을 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해소년에 대한 가정법원의 처분결정은 경찰단
 계, 검찰단계, 보호관찰소 직원의 조사,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가정법원 조
 사관의 조사자료 등 여러 과정을 통해 축적된 기록과 심리조서를 근거로 가정법원
 판사가 내린 처분결정이지만,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가정법원심판의 비공개심리와
 피해자나 피해자측 보조인의 참석이나 의견진술이 없는 절차, 피해소년의 의견진
 술이나 불복권, 항고권이 없는 처분결정, 비행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없는 화해절
 차 등은 가해소년이 범죄로 발생한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진지한 반성과 화해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범죄소년이 재할과 갱생을 하는데 사법절
 차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형사재판의 목적은 사건의
 진상 파악, 실체적 진실 발견, 공정성,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 재판의 신속,
 적정절차이지만 가정법원심리의 경우 가해소년의 성행,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
 의지나 보호능력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가해소년의 개선·교정에 목적을 두고 있
 기 때문에 형사재판과 비교할 때 장기 2년이하의 경미한 보호처분이 결정되기 때
 문에 재범을 해도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기대심리는 소년범죄자의 범죄에 대
 한 경각심과 긴장감을 결여되게 하여 재범을 반복하게 하는 원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3 장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한 외국의 입법례

제1절 미국의 입법례²⁰⁾

1. 청소년법의 강화

20) 류병관, “미국 소년사법에 있어 범죄피해자권리 등장에 따른 논의”, 『소년보호연구』 제17권,
 한국소년정책학회, 2011, 213면.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청소년 살인 사건의 놀라운 증가는 프린스턴의 존 디올리오(John Dilulio)와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제임스 앨런 폭스(James Alan Fox)와 같은 학자들이 다가오는 "무자비하고 도덕적으로 빈곤한 청소년"의 파도를 예측하도록 자극했다. 미국 청소년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만 근거한 이러한 예측은 소년법원이 소위 "청소년 포식자"라고 불리는 범죄소년의 비행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의 검사와 범죄보수주의자들은 소년법원의 정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에서 수사학을 채택하면서 "수퍼프레데터" 라는 집단에 가세했다. 그들은 소년법원을 "구식"이라고 말하면서 법원이 심각하고 폭력적인 소년 범죄자를 다룰 의지와 능력이 부재하다고 판단하고, 소년법원의 나머지 보호 요소를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주 입법부는 더 강력한 소년법에 대한 요구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1990년과 1996년 사이에 40개 주가 청소년을 성인으로 기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덜 개별화된 정의와 기소된 범죄의 성격에만 근거한 법률은 비공개로 유지되었던 청소년의 기록도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소년법원의 재판이 어떤 경우에는 공개되었다. 그리고 '재활'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강조하던 법령을 '처벌'과 '대중보호'를 강조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청소년 인구의 증가함과 동시에 검사와 정치인은 계속해서 더 강력한 청소년법을 요구했다.²¹⁾

2. 피해자 권리 운동

소년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가 확대되는데 영향을 준 분야가 피해자 인권운동인지 아니면 법철학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피해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책무과 응보적 형벌에 대한 이론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²²⁾ 피해자 권리 운동은 지난 20년 동안

21) Elizabeth S. Scott & Thomas Grisso, "The Evolution of Adolescenc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Juvenile Justice Reform", 88 J. Crim. L. & Criminology 137, 1997, p. 138.

22) 류병관, 앞의 논문, 218면.

소년 사법 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국의 입법자들은 피해자에게 청소년 청문회에 참석할 권리를 부여하고, 청소년 사건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청문을 받으며, 판결을 받은 청소년의 선고 시 구두 또는 서면 피해자 영향 진술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 법령과 주 헌법을 수정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권리는 소년법원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판사와 다른 사람들이 소년법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워싱턴의 사건은 피해자의 영향 증거가 사실 확인자에게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영향의 한 예이며 일부 청소년 법원 판사가 청소년의 반성과 사과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높은 기대를 반영했다. 피해자인권운동은 사형제도와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학문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지만 피해자 권리가 소년법원의 정책과 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한때 판사는 주로 비행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관심을 두었지만, 이제 피해자 권리 법령은 소년법원이 아동의 재활 요구와 피해자에 대한 책임 및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의 회복과 같은 다른 경쟁적 이해 사이의 균형을 맞출 것을 요구하였다. 범죄피해자들이 소년사법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피고소년들은 비밀의 보호막을 잃고 피해자의 처지를 듣고 공감하는 판사들의 보복적 선고의 위험이 확대되었다. 피해자 권리 운동의 부상은 소년법원 철학의 광범위한 변화와 평행을 이루었다. 피해자의 권리는 정책입안자들이 이미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의존도를 재고하고 있던 시기에 소년법원에 도입되었으며, 소년사법제도의 최우선 목표는 재활이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소년법원은 공공의 안전과 책무성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들의 초점을 비행아동을 갱생시키는 것 이상을 추구하였다. 피해자 권리 운동의 보복적 요소는 이러한 소년범죄에 대한 새로운 법과 질서의 대응과 잘 맞아서 소년법과 절차에 쉽게 통합되었다. 가장 널리 승인된 피해자의 권리 중 하나인 판결을 받은 청소년의 선고(또는 처분) 시 서면 및 구두 영향 진술을 도입할 권리에 중점을 둔다. 피해자 영향 진술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고 피해자의 카타르시스, 보복, 경제적, 물질적 손실의 회복에 대한 법원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일부 지지자들은 피해자 영향 진술이 어린 범죄자의 재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이러한 진술을 아동 앞에 제시하면 상당 및 기타 재활 서비스의 이점을 얻을 수 있으

며 아동의 공감과 후회를 키우려는 법원의 노력을 실제로 방해할 수 있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훈련된 중재자 없이 법정외의 과격한 환경에서 전달된 피해자 영향 진술은 피해자가 원하는 유형의 정서적 치유 및 회복을 촉진하지 못할 것이다.²³⁾ 미국의 경우 각주에 따라 조금에 차이가 있지만 성인 법정에서 피해자권리와 소년법정에서의 피해자의 권리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분리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의 소년법정의 피해자 권리는 성인법정과 통합되어 보장되고 있다. 분리된 경우는 성인법정의 피해자관련 권리에 대한 규정을 단순히 문구를 변경하여 소년법정에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으로 적용되고 있다. 즉, 많은 입법자들은 소년법을 개정할 때 성인에게 적용되는 법을 준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범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소년범죄 피해자도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 형사소송법,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 및 증인 보호를 위해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²⁴⁾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판의 모든 재절차 중 출석할 권리(피고인이 증인으로 소환된 가능성이 있더라도 증언 중에 출석할 권리, 미성년자에 대한 판결), 재판관 패널에서 절차·항소·심리날짜를 포함한 재판·선고날짜를 적절한 법 집행 기관 또는 검사가 통지할 권리, 피해자가 소환된 선고 공판 또는 법원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지를 받을 권리, 법 집행 및 기소 노력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및 위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용 가능한 보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보상을 신청하고 받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를 통지받을 권리, 검사 또는 법 집행 기관의 요청에 따라 급여 및 기타 직원 혜택의 손실 없이 그리고 고용주가 어떤 형태로든 간섭하지 않고 형사 사법 절차에 협조할 권리, 즉각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 지원이 시행되기 전에 법 집행 기관에 의해 부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지 않을 권리, 중범죄 피고인의 진술서 준비에 사용하기 위해 서면 또는 구두 진술을 할 권리, 피고인의 유죄 판결 이후 언제라도 피고인의 유죄 판결에 대한 완전한 기록에 대해 검사로부터 정보를 받을 권리, 피고인의 특별 의료 가석방에 관한 청문회를 통지받을 권리, 피고의 석방 또는 도주를 통지

23) Kristin Henning, "What's Wrong with Victims' Rights in Juvenile Court:RetributiveVersus Rehabilitative Systems of Justice", 97 Cal. L. Rev. 1107, 2009, p.1108.

24) 류병관, 앞의 논문, 219-220.

할 권리,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로 판명된 피고의 지위에 관해 통지받을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²⁵⁾ 그러나 성인법정과 달리 소년법원의 경우 미성년자의 체납 여부, 부모가 배상금이나 벌금 제출 명령, 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청소년 모두 부모책임 교육프로그램 참석 명령, 피해자의 재활을 위한 서비스 제공, 미성년 가해자 부모의 합의금 지급의무를 청소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²⁶⁾ 위와 같이 대부분의 주에서 인정하고 있는 피해자 권리 중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여권과 공판정에서의 피해자진술권은 소년의 재활과 갱생이라는 미국에 소년법의 이념과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권리이다.²⁷⁾

3. 피해자 진술권

미국은 피해자의 권리와 책임이 소년법정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활을 소년사법 시스템의 실행 가능한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 전국 입법, 항소법원, 대법원 법학, 그리고 최근의 청소년 발달에 관한 심리학 및 신경학적 연구는 모두 청소년 법원이 청소년 범죄자를 갱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첫째, 많은 주에서 책무성 및 공공 안전을 위해 소년사법을 형사법에 통합했지만, 그 어느 주에서도 소년범죄자의 사회복귀를 포기하지 않았다. 소년사법 제도에서 주 법령은 판사가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아동의 복

25) Alaska Stat. § 12.61.010 (2006)(1997); Conn. Gen. Stat. Ann. § 54-201 (2001)(1995); Conn. Gen. Stat. Ann. § 46b-138b(2004)(1989); D.C. Code § 16-2340(2008); Fla. Stat. Ann. § 960.001 (2006)(1992); Haw. Rev. Stat. § 8010-4 (2007) (1998); Idaho Code Ann. § 19-5306 (2004)(1995); 705 Ill. Comp. Stat. Ann. 405/5-115(2007); Kan. Stat. Ann. § 74-7333 (2000)(1999); La. Rev.Stat. Ann. § 46:1841-45 (1999)(1992); La. Child. Code Ann. art. 811.1 (2004)(1993); Mass. Gen. Laws Ann. ch. 258B, § § 1-3 (West 2008)(1995); Mo. Ann. Stat. § 595.200(2003) ; Nev. Rev.Stat. § 217.070 (2005)(1969,1997); N.J. Stat. Ann. § § 52:4B-34 to -38 (2006) ; Okla. Stat. Ann. tit. 19, § 215.33 (2000) ; Or. Rev. Stat. § 419C.411(4)(e) (2007)(1995); Wash. Rev. Code Ann. § § 7.69.010-.050 (2007)(2004) ; Mich. Comp. Law Ann. § § 780.751-.775 (2007) (1988) ; N.C. Gen. Stat. § § 15A-824 to - 827 (2007); N.D. Cent. Code § § 12.1-34-01 to -05 (1997) ; Vt. Stat. Ann. tit. 13, § § 5301-5307(1998)(1985).

26) Ala. Code § 12-15-71 (1995); Alaska Stat. § 47.12.120(b)(4) (2006); Colo. Rev. Stat. § 19-2-919(2008);Conn. Gen. Stat. § 46b-140(b),(d) (2004); D. C. Code § 16-2320.01(2008).

27) 류병관, 앞의 논문, 220면.

지에 도움이 되는 보살핌과 지도를 제공하고, 아동을 안정된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의 연속성을 식별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아동의 재활 및 치료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몇몇 주 입법자들은 아동이 책임을 지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아동의 연령, 교육, 정신적 및 신체적 조건, 배경을 감안하여 적절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할 구역에서는 재활에 대한 프리미엄을 유지하면서 공공 안전의 목표를 승인하였다. 항소법원은 또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적절하고 의무적인 대응으로서 재활을 계속 지지해 왔다. 일리노이 주 의회의원들이 주의 소년 사법 목적 조항을 개정한 지 7년이 지난 후에도 일리노이 주 항소 법원은 계속해서 재활을 주정부의 주요 목표로 인정하고 있다. 2006년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입법부는 소년법정제도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비행청소년을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로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1심 법원에 선택권을 주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재활이라는 단일 목표에서 대중을 보호하고 법 위반에 대해 소년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최우선 관심사를 포함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이 법에 따른 절차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범죄가 아니다. 비행 절차는 보호적 성격을 띠며 법의 목적은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하고 갱생시키는 것"이라는 판결을 했다.²⁸⁾

미국의 비행청소년의 재활과 갱생에 대한 목표는 소년법정에서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인 진술권과 대립을 하게 된다. 소년법정에서의 찬성론자는 형사사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형사사법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관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범죄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피해를 이해함으로써 적절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행사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²⁹⁾ 범죄로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형선고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피해자의 의견과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피해자 진술권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다.³⁰⁾ 소년범죄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년법정에 금

28) Kristin Henning, 앞의 논문, p. 1119.

29) Payne v. Tennessee, 501 U.S. 808, 1991, p. 819; Erin Ann O'Hara & Douglas Yarn, On Apology and Consilience, 77 Wash. L. Rev. 1121, 2002, p. 1124.

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사회봉사 등 통해 사회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궁극적인 목표인 범죄소년의 재활과 갱생을 도모 하는데 유익하다는 주장을 했다.³¹⁾ 대부분의 주에 소년법정에서는 피해자진술권과 같은 피해자 권리가 인정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첫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재판의 과정보다 피해자 진술이 양형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어 판사의 적절한 판결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피해자 진술권의 행사 여부에 따라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 없는 판결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피해자 측의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기대감이 양형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피해자 의견진술권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에 의한 형의 양형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아닌 판결에 의한 2차 가해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³²⁾ 소년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권이 지나치게 행사된 영향으로 엄중한 판결의 내려진 사례를 보면, 2007년 워싱턴 주 소년법원 판사가 17세 소년이 교통사고로 유죄를 인정한 후 126주의 구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피해자 진술권을 인정한 법령은 소년범의 재활과 갱생에 관심을 기울였던 소년 법원의 우선순위를 바꾼 부정적인 상황을 만든 사례로 볼 수 있다.³³⁾

제2절 일본의 입법례

1. 소년법 개정

30) President's Task Force on Victims of Crime; Final Report, 1987, pp. 77-78.

31) Peggy Tobolowsky, "Victim Particip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Fifteen Years After the President's Task Force on Victims of Crime, 25 N.E. J. on Crim. & Civ. Con. 21, 1999, p. 81.

32) 류병관, "범죄피해자진술권의 성격 및 내용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20권, 2008, 215-217.

33) Henning, Kristin N., "What's Wrong With Victims' Rights in Juvenile Court?: Retributive v. Rehabilitative Systems of Justice", 97 Cal. L. Rev. 2009. p. 1107.

일본의 경우 소년법 개정의 계기가 된 사건은 1997년 발생한 고베 연속아동살상 사건때문이다. 14살 소년이 잔혹한 연쇄 살인을 한 사건으로 일본에 큰 충격을 주었고, 당시 법상 16살 이하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소년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2005년 다시 사회로 복귀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0년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하향했고, 2014년에는 18살 미만 소년에 내릴 수 있는 징역형 상한을 15년에서 20년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심리의 비공개 원칙이었던 소년법의 개정을 2000년에 실시하여 제31조의2 제1항에 “해당사건의 피해자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정재판소는 ① 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거, ② 해당결정의 연월일,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였으며. 예외적으로 통지하지 하지 않을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심판관련 통지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이익도 어디까지나 소년의 건전육성이라고 하는 소년법의 목적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³⁴⁾ 일본 소년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에 따라 피해자 등에 대한 심판결과 등의 통지, 피해자 등에 의한 심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 피해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청취 등이 포함되었다. 2008년 소년법 개정은 거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제도의 개선에 역점을 두었다. 피해자 등에 대한 소년심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는 제도의 창설, 소년법원(가정재판소)이 피해자 등에 대해 심판상황을 설명하는 제도의 창설, 피해자 등에 의한 기록의 열람 및 등사 범위의 확대,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한 의견의 청취 대상자의 확대 등이다.³⁵⁾

일본 법무성 법무위원회 조사실 나가미네 요이치는 소년법(범죄 피해자 관계) 부회의 요강 채택에 관한 회장담화에서 “범죄 피해자등에 의한 소년심판의 방청” 관련 소년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의 제출 배경·경위에 대해 최근 형사 사법에서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가족 등 (이하 피해자 등우)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급속히 높아지고, 그에 따라 입법에 의한 제도의 창설이 진행되었지만 소년 사법에서는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손상되기 쉬운 소년의 정서를 보호와 비행으로 인해 장래의 장래에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용

34) 김혁, "소년사건에서의 피해자 정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1호, 2016, 240~241면.

35) 정수경변호사, “소년 사법제도 개선방안”, 『소년 사법제도 개선방안 입법포럼』, 2019, 36면.

이하게 하는 등의 배려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소년 사건의 심판 절차는 형사 재판의 공판과 달리 비공개로 되어 있으며(일본 소년법 제22조 1항), 당사자인 피해자조차도 가해자에 대한 소년심판의 내용과 심판결과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받지 받을 수 가 없었다. 이러한 차별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소년 심판의 피해자등에의 정보 공개의 배려가 입법 단계에서 최초로 입법된 것은 2000년 소년법 개정이었다. 이 개정에 의해 의 피해자에 의한 심판기록의 열람·등사(동법 5조의 2), 피해자로부터의 의견 청취(동법 9조의 2), 피해자에 대하여 소년 심판의 결과 등의 통지(동법 31조의 2)제도가 창설되었다. 피해자로부터의 의견 청취의 경우 피해자는 소년의 면전에서 증인의 자격 이외로 의견을 말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의견진술을 인정하는 이상 소년 심판에의 재석, 출석을 인정하고 싶다는 피해자 측의 요구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범죄 피해자에 관한 문제는 사법제도개혁 추진 본부에 설치된 검토회의에서도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2001년 7월에 범죄피해자의 비참한 상황과 형사절차에서 소외된 지위에 대한 불만을 직접 총리에 호소를 한 계기로 의원입법을 하여 2004년 12월 「범죄피해자등 기본법」이 성립하였으며, 2005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 법의 기본이념은 “모든 범죄 피해사람은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그 존엄성에 적합한 처우를 보장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동법 3조 1항). 또한 이 법의 시행을 받아 2005년 12월에 범죄피해자등 기본계획이 결정되었는데, 그 중 "법무부에서 2001년의 소년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시행 후 5년이 경과한 후 실시하는 검토에서 소년심판의 방청 여부를 포함한 범죄 피해자등의 의견·요망에 근거한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론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검토를 진행함에 있어서 법무성에서는 범죄피해자단체, 그 지원 단체의 의견, 요망 청취를 위한 청문회나 법조관계자, 유식자 등과의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 11월 29일에 비공개원칙 소년심판 중 살인등의 중대 사건에 한 범죄 피해자와 그 유족의 방청을 인정하는 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 법무 대신은 법제심의회에 자문했다. 심의회에서는, 부회(소년법(범죄 피해자 관계) 부회)를 설치해 4회에 걸쳐 회의에서 자문 사항을 검토 2008년 2월 13일 법제 심의회 (전체회)에서 답신을 받았다. 그 후 입안 작업이 진행되었고 소년법

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2008년 3월 7일 결정되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 개요는 법안은 4항목으로 이루어지고 그 중 3항목은 소년심판의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것이었다.

피해자 등에 의한 소년 심판의 방청법안은, 피해자들의 심판의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싶다고 하는 심정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등 기본법의 취지 등에 관해 보면 충분히 존중되어야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경우에, 소년심판의 방청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행 소년법의 틀은 유지하면서 비공개소년 심판에 대해 피해자에게만 예외적으로 방청을 인정하려고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죄종에 대해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며, 가정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했을 경우라는 제한조건을 규정했다. 대상 범죄소년(14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지른 소년, 소년법 3조 제1항 1호, 동법 2조1항)의 사건 외 촉법소년(14세에 못 미치고 형벌 법령에 접하는 행위를 한 소년, 동법 제3조 1항 2호)의 사건이라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상 범죄는 고의의 범죄 행위에 의해 피해자를 사상시킨 죄(살인, 상해치사 등) 또는 일본 형법 211조에 규정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죄에 한정되어 있다. 부상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켰을 때” 로 제한된다. 이 의미에 대해 법제 심의회사무국 측에서 피해자가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 처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되어있다. 이런 형태로 방청신청인이 심판을 방청할 수 있다면, 피해자 자신도 심판의 방청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 이 방청신청인이 소년 심판의 방청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 또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또는 그 심신에 중대한 고장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직계의 친족 혹은 형제자매” 이다. 피해자 등의 신청을 전제로 법원의 허가할 경우 소년의 나이·심신 상태·사건의 성질·심판의 상황·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정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방청을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방청은 법원의 허가가 전제가 되고 있다. 또한 법원의 방청 불허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불복 신청을 인정하는 규정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 외의 사정으로서 피해자 등의 인원수, 비밀 준수 의무위반의 우려 등이 고려되어 있다. 또한 법원의 허가에 대해서는 심판의 전부에 대해 방청을 허가할 권리가 법원에 있기 때문에 소년범죄사건의 성격상 당연히 심판의 일부에 대해서만 허가하는 것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첨부 법안에는 심판의 방청이 허가되는 자로 방청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외의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불안하거나 긴장감을 주지 않는 경우, 불안 또는 긴장을 완화하는 데 적합할 경우, 심판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인정되는 자이다. 인정되는 자로 조문상에 부첨인의 예시는 게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해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람, 피해자의 지원 또는 상담에 대응하는 변호사 등이 있습니다. 방청자등의 비밀준수의무 등 법안은 소년 심판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 취지로부터 방청자 등에게는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비밀준수의무의 범위는 소년의 성명 기타 소년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다. 또한, 방청자 등이 심판 방청으로 알게 된 사항을 채용하여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관계자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조사 또는 심판에 지장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방청자 등은 예를 들어 불법 프라이버시 침해를 실시하여 관계자에게 손해를 준다. 그러한 경우에는 민법 709조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며, 해당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230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다시 청취, 기록 열람, 등사 또는 심판결과 통지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소년 보호 사건의 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해서는 2000년 개정법에 의해 피해자 등 다른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은 피해자 등의 손해 배상 청구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며,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대한 영향, 사건의 성질, 조사 또는 심판의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해당 사건의 비행 사실에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인정되어 왔다. 이 제도에 대해 법안에서는 피해자 등이 해당 보호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법률상도 그 점을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위의 요구 사항을 수정하고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원칙 기록의 열람·등사를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대한 영향, 사건의 성질, 조사 또는 심판의 상황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고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열람·등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비행 사실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고 있던 열람·등사의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소년의 신상·경력 등에 관한 부분도 열람·등사를 가능하게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소년의 요보호성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조사에 대한 기록인 자료(예를 들어, 감별 결과 통지서, 학교 조회 회답서 등이 편철)에 대해서는 소년이나 가족, 관계자의 명예나 프라이버시에 상당히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인 관계로 열람·등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소년 보호 사건의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한 의견 청취는 지금까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외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그 배우자, 직계의 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다. 법안에서는 피해자의 심신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 등으로부터 신청에 의해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종래의 의견 청취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소년의 복지를 저해하는 성인의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가정 법원이 관할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소년법 제37조), 법안에서는 이러한 사건의 관할을 이관하기로 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건을 발견하면 가정법원의 통지의 의무를 규정하는 동법 제38조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피해자 등에게 소년 심판의 방청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년이 위축해 자발적인 심정을 말하기 어려워지거나 법원에서 프라이버시에 걸치는 사항을 심판으로 취해 어려워지거나 소년 심판의 교육 기능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소년사건은 다양하며 항상 그러한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대상사건이 심각한 사건인 경우 가정법원조사관에 의한 충분한 피해조사를 사전에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심판 기일마다 소년의 나이, 심정 등을 배려하고 세심하게 방청의 상당성을 판단하며 법원의 판단에 의해 심리계획에 근거하여 심리를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 등에 퇴석을 원할 수도 있다는 법제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은 맞지 않는다는 반박이 있었다. 2차 가해에 대한 논쟁으로 피해자들에게 소년심판의 방청을 인정하면 피해자들이 심판에서 소년의 언동에 상처를 입으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방청에 의해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촉발하게 되는지 개별사건에 따라 다르며, 방청은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해 허가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것을 가만하고 방청을 희망해야 한다고 보았다.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방청을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박이 있었다.

심판의 시기에 대한 논점으로 소년사건은 사건발생 후 단기간에 심판이 열리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심판을 방청해도 피해자등과 소년의 쌍방이 심리적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단기간에 대면할 경우 화해의 가능했을 수 있는 양자의 관계가 오히려 비틀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2000년 개정에 의한 의견진술제도 도입 시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도입해 보았을 때 심판이 결정되는 날에 의견 진술을 많은 피해자들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었다.

심판정의 협소에 대한 논점으로 심판정은 좁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방청에 의해 소년은 가까이 있는 그 존재에 위축해 불안, 공포의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트러블 발생의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넓은 방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별실을 이용하면 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원래 간절함을 취지로 완만하게 실시하기 위해(소년법 제22조 1항) 같은 시선으로 근접한 거리에서 소년에게 말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소년심판의 특질 등에서 단순히 넓은 심판정을 사용하면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촉법소년 사건에 대한 논점으로 14세 미만의 소위 촉법소년의 사건을 방청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다. 피해자 등에게 보면 당연히 피해는 소년의 나이에 따라 변하지 않다고 보았다. 촉법소년의 사건은 검찰관이 송금되어 형사 재판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소년 심판을 방청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높다고 보아 법안에서는 촉법소년의 사건에 대해서도 방청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외에도 모니터를 통해 피해자 등이 소년 심판을 다른 방에서 방청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재판장의 허가에 의해 소년의 친족, 교원 그 외에 상당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의 소년 심판에의 참석을 인정하는 소년 심판 규칙 제29조를 근거로 피해자 등의 소년 심판 방청을 인정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피해자 등에 의한 소년 심판의 방청이 재판관의 심리 운영에 미치는 영향, 방청자등에 비밀준수의무 등의 의무 위반이 있었을 경우의 벌칙의 필요성 등이 문제가 되었다. 36)

36) 法務委員会調査室 長嶺 陽一, “犯罪被害者等による少年審判の傍聴~少年法の一部を改正する

2. 피해자 지원

일본 법무성의 소년 심판과 관련된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소년 사건에 대해 검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나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지만 가정 법원의 심리에 붙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사료할 때는 가정 법원에 송치한다. 그러나 수사의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가정법원은 검찰관이 송치한 소년의 사건기록 및 가정법원 조사관에 의한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심판을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심판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판을 한다. 소년 심판에는 보통 검찰관이 참석하지 않지만 사실 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관이 관여할 수도 있다. 심판의 결과 비행 사실이 인정되어 보호 처분에 붙이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 아동 자립 지원 시설 또는 아동 양호 시설 송치, 보호 관찰 등의 보호 처분을 한다. 죄의 질이나 정상에 비추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상당히 인정할 때는 사건을 검찰관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한다. 소년사건의 송치를 받은 검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될 때 사건을 형사법원에 기소한다. 소년범죄피해자의 사법절차에 인정된 법적 권리를 보면, 첫째, 소년 사건의 기록의 열람·복사이며, 소년 사건의 기록(단, 소년의 요보호성에 관해서 행해지는 조사에 관한 기록인 소위 사회기록은 제외된다.)에 대해서 심판을 개시하는 결정이 있던 사건으로, 피해자나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정당하지 않은 이유에 의한 경우나 상당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소년 사건의 기록의 열람·복사를 하는 것이 인정된다. 둘째,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제도이며 이 제도는 피해자나 유족 등의 분들의 신청에 의해 그 감정이나 의견을 판사 또는 다른 판사, 가정법원의 조사관에게 말할 수 있다. 셋째, 피해자 등에 의한 소년 심판의 방청이며, 소년 사건 중, 살인, 상해 등의 고의의 범죄 행위에 의해 사람을 사망시키거나 상치

法律案~“, 『立法と調査議會』, 少年法(犯罪被害者關係部会の要綱採択に関する会長談話, 281, 2008. 3~9면.

입은 사건이나 과실운전치사상등의 사건(피해자를 손상시킨 경우에 대해서는, 상해에 의해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켰을 때, 12세에 못 미치고 형사법령에 접하는 행위를 한 소년에 관련된 사건은 제외)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유족 등의 분들의 신청이 그러므로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상당히 인정되는 경우에 소년 심판의 방청을 인정한다. 넷째, 피해자 등에 대한 심판 상황의 설명이며 피해자나 유족 등의 분들의 신청이 있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정 법원으로부터 심판 기일에 있어서의 심판의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다섯째, 재판결과 등의 통지제도이며 피해자나 유족 등의 신청이 있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으로부터 소년의 이름이나 심판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여섯째, 피해자등 통지 제도(소년 심판 후의 통지)이며, 「피해자 등 통지 제도(소년 심판 후의 통지)」 처우 상황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① 입원 연월일 및 수용되고 있는 소년원의 명칭·소재지, ② 소년원에 있어서의 교육 상황(대개 6개월마다 통지), ③ 소년원을 출원한 연월일 ④ 가퇴원 심리를 개시한 연월일, ⑤ 가퇴원을 허락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연월일, ⑥ 보호관찰이 개시된 연월일이나 보호관찰 종료 예정 연월일, ⑦ 보호관찰중의 처우 상황(대개 6개월마다 통지), ⑧ 보호관찰이 종료된 연월일등이다.³⁷⁾

제3절 뉴질랜드의 입법례

1. 소년사법 개혁

뉴질랜드에서의 회복적 사법은 1989년 「아동·청소년 및 가족법(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ct 1989)³⁸⁾」을 제정하여 가족집단회의

37) 일본 法務省, 少年審判に關連する被害者支援(https://www.moj.go.jp/keiji1/keiji_keiji11-5.html), 2021. 11. 20. 검색

38) 김혁, "뉴질랜드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최근 동향 및 그 시사점", 『형사정책연구』 31권 제4호, 2020, 76면; 이후 개정법도 1989년법으로 칭하기도 한다.

(Family Group Conference)를 소년법원의 심리에 앞선 개입 수단의 하나로 도입하면서 제도화되었다. 「아동·청소년 및 가족법」은 당시 뉴질랜드의 소년 범죄율과 구금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점, 그중에서도 특히 마오리족 소년의 범죄율 및 구금율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의 소년사법체계를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는 배경 하에 제정되었다. 당시의 소년사법체계를 분석한 1987년 보고서는 경찰이 다이버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신 체포 및 기소를 선호하고, 그 결과 갱생(rehabilitation)이라는 미명 하에 경미한 범죄까지 법원의 심리 대상이 되어 사회통제망이 확장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다.³⁹⁾ 뉴질랜드 청소년 사법 모델은 독특합니다. 이는 1989년 아동, 청소년 및 그 가족법(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 Families Act 1989)의 기본 철학에 영향을 미치도록 고안된 일련의 획기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청소년 사법 시스템의 창립 현장을 지키고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1989년 법 이전에 존재했던 체제에서 실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대의 청소년 사법을 시도했다. 청소년 사법 커뮤니티의 대부분은 이 법의 통과로 청소년 사법제도의 급진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뉴질랜드 대중은 청소년 사법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더 가혹하고 더 긴 형벌을 부과하고 “미성년 범죄에 대한 성인 시간”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라는 요구가 강했는데 청소년에 의한 폭력범죄의 노출된 사례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있었다는 알 수 있다. 선거가 있는 해에 청소년 정의는 항상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청소년법원 폐지를 제안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반응은 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협하였으며, 진정으로 청소년을 위한 선구적인 법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맹목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청소년 법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직면한 과제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이버전, 책임(accountability), 피해자의 관여, 가족의 관여를 핵심으로 하는 1989년 법이 제정되었다. 즉 「아동·청소년 및 가족법」은 회복적 소년사법제도를 구축하여 법원의 개입을 축소하는 대신 다이버전을 촉진하고, 피해

39) 김혁, 앞의 논문, 77면; Watt, Emily, “A History of Youth Justice in New Zealand, Department for Courts”, 2003, pp. 24-25. Paper presented at the “Juvenile Justice: From Lessons of the Past to a Road for the Future” conference held on December 1-2, 2003, in Sydney, Australia.

자, 가족, 지역사회, 기타 문화적 개입 수단들을 활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특히 1989년 법은 소년사법절차 전반에 있어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화한 서구에서의 최초의 입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⁴⁰⁾

2. 회복적 사법의 태동

1989년 「아동·청소년 및 가족법」(Children, Young Persons, and The Families Act 1989)을 통해 아동범죄자를 위한 가족집단회의(Family Group Conferences for the Young 범죄자)를 도입하면서 범죄와 피해에 대한 대응으로 뉴질랜드에서 회복적 사법 원칙과 관행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걸쳐 유사한 원칙과 관행이 시작되었다. 성인 범죄자와 관련된 사건에 임시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2002년 선고법, 2002년 가석방법, 2002년 피해자 권리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공식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회복적 사법 절차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함께 이 세 가지 행위 즉 회복적 사법 절차에 대한 더 큰 인정과 합법성 부여, 적절한 경우 회복적 사법 절차의 사용 장려, 회복적 사법 절차가 발생한 경우 범죄자의 선고 및 가석방 시 고려되도록 허용되었다. 회복적 사법 절차는 형사 사법 시스템의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었지만, 지방 법원과 경찰 성인 전환 계획(Police Adult Diversion Scheme)의 추천에 대한 선고 전 회의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일반적인 회복적 사법 절차였다. 대부분의 지방 법원은 이제 회복적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⁴¹⁾ 이후 동법은 2010년과 2017년에 대폭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2017년 개정을 통해 그 명칭이 「아동 및 청소년의 복리에 관한 법률(Children's and Young People's Well-being Act 1989)」로 변경되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⁴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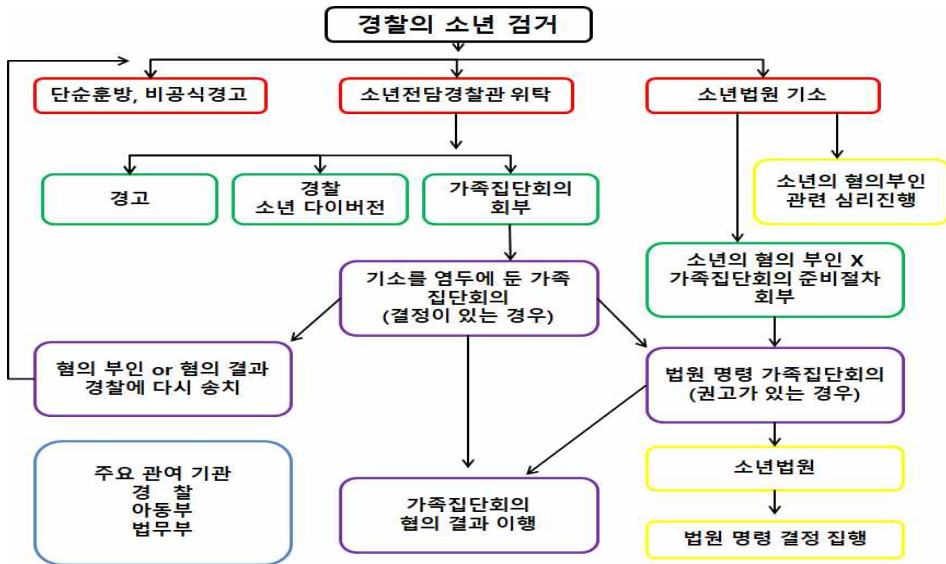
40) 김혁, 앞의 논문, 77면; Andrew Becroft, "Youth Justice - The New Zealand Experience Past Lessons and Future Challenges", 2003, p. 9-11.

41) Ministry of Justice, Restorative Justice : Best Practice in New Zealand, 2004, p. 7.

42) 김혁, "뉴질랜드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최근 동향 및 그 시사점", 『형사정책연구』 31권 제4호, 2020, 76~77면.

3. 가족집단회의 운영

<표> 7) 소년사건처리절차 흐름도⁴³⁾



가족집단회의는 소년법원을 통한 기소를 피하기 위한 우회적 수단과 소년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된 소년범죄자에 대한 양형지원을 기능을 하고 있다. 가족집단회의는 범죄와 관련된 피해자, 가해자 및 각 가족에게 청소년범죄에 대한 가장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가족집단회의는 다음 세가지 사유에서 경찰이나 소년법원의 요청으로 소년법원판사가 소집한다. 첫째, 소년이 체포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형사소송을 고려 중인 경우, 둘째, 소년이 체포되었고 소년법원에서 기소되었지만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셋째, 법원에서 처음에 유죄

43) Ministry of Justice, Youth Justice Indicators Summary Report August, 2019, p. 29; 김혁, “뉴질랜드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최근 동향 및 그 시사점”, 『형사정책연구』 제31회 제4권, 2020. 82면.

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이 모든 경우에 가족집단회의는 소년범죄를 협의할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위 세가지 사유 중 가족집단회의의 협의 결과가 법원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셋째의 경우로 법원이 처음에 유죄를 선고한 경우이다. 소년사법조정관은 소집된 사건이 보고되면 가족집단회의에 회부할 것에 동의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단기간 동안 반복되는 범죄와 관련된 특정 상황에서는 가족집단회의를 개최해야하는 요구사항이 면제될 수 있다. 가족집단회의에 소집된 사건의 상정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고려된다. ① 회의의 구성의 효용성 여부, ② 가족 또는 친족 및 참석할 자격이 있는 다른 관계자들과 상의한 결과 집단회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 ③ 이전 가족 그룹 회의의 권고, 계획 또는 결정에 대한 소년범죄자의 이행 여부, ④ 관련된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배상을 위해 가족 그룹 회의의 필요 여부 등이다. 가족집단회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회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이 결정에 의해 회의를 열 수도 있다. 가족집단회의를 소집할 때 소년사법조정관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청소년 및 그 가족, 친족과 회의의 시간, 장소, 날짜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을 최대한 고려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소년사법조정관의 결정이 우선한다.

가족집단회의의 개최 장소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회의의 구성원은 관련 절차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회의 장소에 대한 결정 권한이 포함될 수 있지만 경찰서 및 법원 사무소는 적절한 장소로 보지 않았다. 1990년대 가족집단회의를 개최는 주로 가해소년의 부모나 가족의 집, 교회 회관에서 열렸다. 그러한 장소는 소년과 그 가족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유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장소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가족지원부(Children, Youth and Family Services) 사무실이나 회의실 또는 기타 정부 기관과 같은 곳에서 가족집단회의를 개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소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덜 위협적일 수 있고, 대중교통으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회의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같은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가족법은 가족집단회의 소집의 개최일자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이 아닌 청소년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와 관련하여 소집된 모든 회의 또는 소년이 체포된 사건은 청소년사법조정관이 집행관으로부터 소년이 기소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청소년사법조정관이 소집해야 한다. 소년이 기소를 거부하고 법원이 심리가 계속 중인 동안 구속을 명령한 경우 가족집단회의는 법원이 구속을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집되어야 합니다. 7일 이내라는 단기간에 가족집단회의를 열개하는 이유는 유엔헌장의 청소년의 권리협약 때문이다. 청소년의 자유박탈은 최후 수단이어야 하며, 가능한 단시간이어야 한다고 헌장은 규정하고 있다. 소년이 범죄로 체포되어 소년법원에 회부되어 변론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구속된 경우 판사가 가족집단회의를 개최하도록 지시한 청소년사법담당관은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소년법원에서 소년의 범죄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고 가족집단회의에서 법원이 해당 범죄에 대해 해당 소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기회가 없는 경우, 유죄확정 이후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가족법은 가족집단회의의 기간이 대한 규정이 강제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관련 기간 제한이 가족법의 철학과 목적으로 볼 때 강제규정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가족법은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제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형사절차가 중단되거나 기각된다. 또한, 가족법에는 별도의 법정기한이 있으며 그 기한은 가족집단회의를 마쳐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있다. 소년이 고소를 기각한 가족회의는 법원에서 7일의 기한이 있다. 기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자신을 구속하도록 명령했으며, 체포된 소년이 소년법원에 출두한 경우 기타 가족집단회의는 소집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⁴⁴⁾ 가해소년이 범죄혐의 사실을 부정하거나 가족집단회의의 구성원 중 이의제기할 경우 혐의가 중단되고 일반사법절차로 진행을 하게 된다. 가족집단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 원활하게 실현되도록 법집행기관이 협의회의 결정 및 배상계획 등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가족법에 두고 있다. 소년가족지

44) 조지 모소라키스(김희균역), “소년범죄에 대한 뉴질랜드의 가족단위협의회: 정책과 현행 실무의 개관”,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2006, 27~31면.

원부장관 또한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합의된 내용에 따라 배상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공소가 취소되거나 무죄방면 등이 결정이 된다.

제4절 소 결

미국의 경우 살인과 같은 잔인한 소년범죄가 증가하면서 일반적인 소년법의 목표인 재활과 갱생의 기초를 벗어나 범죄소년에 대한 책무와 보복적 형벌에 대한 이론의 확대를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정당화·합리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피해자 권리운동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소년법원의 우선순위가 피해자 권리인 것으로 판사들이 인정하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주가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성인법정의 피해자 권리와 소년법정의 권리가 통합되어 있거나 준용하여 사용하였다. 기본적으로 피해자는 재판의 모든 재절차 중 출석할 권리와 재판·선고 날짜를 통지받을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가정법원 심리의 경우 심리의 비공개 원칙인 관계로 피해자는 출석할 권리도 없으며, 방청마저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또한 심리에 대한 정보접근과 제공이 제한하고 있어 기일과 처분결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볼 때 단지가해자가 소년이라는 이유로 헌법 제21조 보장된 알 권리를 피해소녀에게 적용하고 있지 않는 차별적인 사법절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소년법정이 피해자 진술권을 인정하는 찬성론은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에 대한 재판관의 이해를 도와 적절할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점, 형선고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피해자 권리실현이 될 수 있다는 점, 법정에서 소년범죄자의 진정한 사과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 적절한 배상과 사회봉사등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여 범죄소년의 재활과 갱생을 도모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피해자 진술권의 인정으로 엄중한 판결을 내린 워싱턴 주 사건의 판례가 있지만 아직 피해자 진술권의 선택권도 없는 우리나라 가정법원의 현실을 볼 때 시행도 하지 않고 먼저 단적인 사례를 이유로 피해자 권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해소년이 소년이

라는 이유로 헌법 제27조 5항에 보장된 재판절차 진술권 등에 대한 침해와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소년법 개정이 계기가 된 1997년 고베 연속아동살상사건 이후 2000년 소년법은 피해자의 정보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피해자등에 대한 심판 결과에 대한 통지, 피해자 등에 대한 심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 피해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등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2008년 소년법 개정은 피해자 등에 대한 소년심판의 방청허가, 심판 기록의 열람 및 등사 범위의 확대,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한 의견의 청취 대상자의 확대가 주된 내용이다.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 중 정보권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법절차의 경우 가해소년의 건전한 성장·재활·갱생을 목적으로 피해소년의 재판참석이 허용되지 않으며, 의견을 청취하는 진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심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의 선택권이 가정부판사에게 있으며,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소년법에 열람·등사에 대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불균형적인 면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의 소년법 개정의 방향에 따라 피해자 측에 심리의 참석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진술과 의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심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피해자로 확대해야한다고 보며, 민감한 신상과련 정보를 제외한 심리기록을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심리 개시의 여부, 심리의 기일·장소, 심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일본의 소년심판제도 중 우리나라 「소년법」에 추가 개정입법의 필요성이 있는 제도는 피해자등 통지제도이다. 소년심판 후 가해소년의 처우상황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법원심리결과 처분이 결정된 가해소년에 대한 소년원 수용상황, 교육상황, 임시퇴원상황, 출원일, 보호관찰 상황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법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또한 가해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육성, 갱생이라는 소년보호이념의 아래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의 알권리, 신체의 안전, 생명권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행정제도개선대회에 참가해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소년원 자원 중에 있는 보호소년의 정보를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제도를 발표했지만 예산과 인권이라는 명목아래 채택이 되지 않은 경험을 한 사실이 있다. 소년원 재원 중에 있는 대부분의 소년원생은 규율과 규칙을 잘 준수하지만 소수에 문제원생들이 같이 재원 중에 있는 원생들을 상대로 규율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지도하는 직원에 대한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소년사법절차에서 충분한 화해나 반성, 책임의식, 갱생에 대한 의지를 형성하지 않고 소년원에 입원한 소년원생들의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외국의 입법례는 뉴질랜드의 가족집단회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화해의 필요성을 가정법원판사가 판단하여 화해권고를 하며, 화해를 위한 날짜와 장소도 가정법원 판사가 결정하여 통보하고 소환하는 구조이다. 특히 화해가 이루어지면 처분에 영향을 결정하는 것도 가정법원판사이다. 이런 가정법원의 개입을 축소하고 뉴질랜드의 가족집단회의와 같이 화해의 가능성이 높은 사법절차의 초기단계인 경찰수사단계에서 화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하여 법원이나 관공서의 경직된 장소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전문기관에서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피해자 그리고 가족들이 중심이 되는 화해절차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제 4 장 소년사법절차의 개선방안

제1절 피해자의 심리 기일 참석 허용, 진술권 보장

1. 현행 규정

소년보호사건의 피해자 등의 진술권은 소년법 제25조245)에 따라 “피해자 또는

45) 소년법 제25조2(피해자 등의 진술권)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의견진술을 신청이 있을 때 소년부판사의 결정에 의해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진술의 필요성과 심리절차의 지연 여부에 판사의 결정에 의해 제한하고 있다. 소년법은 피해자의 심리기일의 방청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보호소년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방청은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오므로 심리의 비공개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미국의 경우처럼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방청이 오히려 보호소년으로 하여금 반성과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실무상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진술 및 방청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이를 허용하고 있다.⁴⁶⁾ 또한 「헌법」 제27조 제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형사피해자는 범죄행위의 피해자라는 본질적 요소가 공통되고, 피해자체와 가해자의 연령자체는 무관하다는 것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절차뿐만 아니라 소년심판절차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소년법」 제25조2 피해자 진술권과 같이 피해자진술권을 규정한 법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가정폭력 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33조 피해자의 진술권 등, 「군사법원법」 제338조 피해자등의 진술권에 규정하고 있다.⁴⁷⁾ 또한 「소년법」은 피해자진술권과 함께 제25조의2 의견진술제도와 제25조의3 화해권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법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심리 기일에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고, 화해권고절차에 피해자의 권리를 미약하게 주장할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6) 신동주판사, “소년 사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소년사법제도 개선방안 입법포럼』, 2019, 60면.

47) 정수경변호사, “소년 사법제도 개선방안”, 『소년 사법제도 개선방안 입법포럼』, 2019, 31~32면.

수 있다는 점에서 소년사법절차로부터 소년범죄피해자의 지위와 권리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 판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화해의 성격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개인적인 합의 불과하며, 화해권고의 주된 목적 자체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소년의 보호와 교정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절차참여를 완전히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해당사건에 대한 정보접근과 제공이 보장되었을 때 비로소 피해자의 의견진술이나 화해권고는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소년보호사건의 정보접근과 제공이 제한되어 있는 사법절차의 대상된 피해자의 경우 적절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⁴⁸⁾

2. 개선방안

2021. 6. 21. 무소속 김병욱 의원, 소년범죄 사건처리 절차에서 소년 피해자 진술 권리 보장법안발의 했는데 제안이유와 주된 내용은 모든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소년범죄 처리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과 검찰의 가해자 성장 과정이나 범죄를 지르는 이유 등에 대한 조사는 양형기준에서 직접적인 참작 요소로 쓰이고 있고 실제 가해자의 불우한 환경에 관한 내용은 가해자들의 반성문 속 단골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결국 피해자는 피해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난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소년범죄가 사실상 가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검찰이 소년 피의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전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병욱 의원은 “소년법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자만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은 문제”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인 소년을 위한 법으로 인해 절망감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할

48) 김혁, “소년사건에서의 피해자 정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1호, 2016, 229면.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방식은 소년법 제24조⁴⁹⁾에 따라 비공개 원칙이다. 이 규정에 따라 소년사건의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가정법원심리의 진행 상황이나 가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년법」의 각종 특칙 때문에 피해자 진술권이 규정되었더라도 적극적인 진술과 의견을 표명할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년법」 제24조 제2항은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규정 자체에 대한 개정을 입법론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김상화의원이 2019년 2월 19일에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는데 개정이유는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이 범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과 특히 일반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해자와는 달리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는 심리비공개원칙 등에 따라 사건 진행상황이나 처분결과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 수 없으며, 검사의 항고권 배제로 인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이나 불처분 결정 등 법원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점이다. 이러한 소년심판절차의 피해자를 형사소송절차의 피해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피해자 등이 심리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도록 한다.(안 제24조제3항 신설) 구체적인 소년법 일부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동법 제24조제3항을 신설하여 제2항의 단성에도 불구하고 소년부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대리인” 등이라 한다)가 참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참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

49) 소년법 제24조(심리의 방식)

- ①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다. 다만, 심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가”를 “대리인등이”로 한다.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 대리인등이 “제30조의2 단서 중 “보조인”을 “보조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변호인으로 한다.”⁵⁰⁾이다.

실제 가정법원심리 현장에서는 가해소년은 국선보조인이나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지만 피해자는 법정대리인마저 존재하지 않아 법률적인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검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검사결정전 조사’ 요구가 있을 경우 보호관찰소장등은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전 조사 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서의 항목에 가해소년의 조사만 규정되어 있을 뿐 피해자의 피해정도, 결과, 회복의 정도에 대한 조사항목이 기재되지 않아 가해소년에 의한 사죄, 피해의 배상 등과 같은 노력의 촉진 또는 확인이 곤란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검사의 기소유예 등의 결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소년보호주의에 입각한 가정법원심리의 비공개는 가해자인 소년에 대하여는 관용과 배려의 보호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해소년의 재범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17차 권고 발표내용에는 소년피해자의 피해영향 진술이 검찰 조사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소년법」 제49조의2에 검사결정전 조사 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것과 조사내용에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피해의 정도 및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⁵¹⁾ 위와 같은 개정안도 의미가 있겠으나 소년사건의 비공개 원칙은 대중의 비난으로부터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능하면 족할 것으로 보이고, 소년범죄사건에 처리에 관하

5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kms.assembly.go.kr/bill/), 2021; 박찬걸, “소년사건 피해자의 인권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호, 2021, 136면.

51) 법무부,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및 소년피해자 지원 강화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7차 권고 발표, 2020, 6-8면.

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가정법원심리기일 참석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가해소년의 정서적·심리적·신체적 보호를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참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본다. 피해에 대한 소년법원 판사의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피해에 상응하면서도 가해소년이 충분히 반성하고 교정되며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처분결정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피해자 측의 법정대리인의 적극적인 진술권과 의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제2절 피해자의 기록의 열람·등사의 권리 허용 52)

1. 현행 규정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열람·등사를 할 경우 소년법 제30조의2⁵³⁾ 따라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을 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열람이나 등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심리 개시가 결정된 후에야 소년부 판사의 허가 없이 보조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처럼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소년법」은 피해자에 의한 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동법 제24조의 제2항은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⁵⁴⁾ 소년법은 제30조의2는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개시 결정 후

52) 형사소송법 59조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형사소송법 59조3 확정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의 경우(19세미만자)

53) 소년법 제30조의2 (기록의 열람·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54) 소년법 제24조 제2항

①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에 소년보호사건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만 있을 뿐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피해자에 의한 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소년법 제24조 제2항) 소년보호사건의 기록 또는 증거물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담당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등사를 인정한 것이다. 이는 보호사건의 적정한 처리와 소년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소년보호사건의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는데, 소년부 판사로서는 보호소년의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사실상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다만 피해자가 합의여부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보호소년과 보호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부분에 한정하여 열람만을 허가하여 주고 있다.⁵⁵⁾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⁵⁶⁾에 대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가정법원심리관련 기록과 심리조서에는 경찰 및 검찰의 사건관련 수사자료, 보호관찰소조사관 및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의 조사자료(소년의 가정환경, 학적, 심리검사, 범죄경력조회, 비행성진단, 보호처분에 대한 의견, 보호자의 정보 등)가 포함되어 있으며, 「소년법」 제24조의 제2항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의 기록은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피해자나 피해자 측의 법정대리인의

55) 차경환, “소년법상 피해자의 지위”, 『형평과 정의』 24집 세미나, 2009, 227면.

56)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 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열람·등사를 신청하더라도 이를 허가하는데 가정법원 판사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를 할 경우 「소년법」 제30조의2에 따라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의 제한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기록의 열람·등사가 어렵지만, 형사소송절차를 전제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7조 제4항의 경우 피해자 변호사가 소송계속 중의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반해 소년범죄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소년에게는 가정법원의 심리결과에 대한 불복권,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년보호사건의 서류나 증거물, 심리조서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는 가정법원의 처분결정에 대한 의견진술과 통지마저도 절차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는 권리차별이 현재까지 소년사법절차에서 진행되고 있다.

2. 개선방안

이러한 소년범죄피해자의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제한하는 법절차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년사법제도개선에 대한 각종 입법포럼이나 법무·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2018. 12. 5. 주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년법개정법률안은 피해자의 기록의 열람·등사의 권리 제한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열람·등사의 신청 주체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고 열람·등사의 허가가 전적으로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권한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소년보호사건 심리의 기록 및 증거물의 열람·등사 신청의 주체로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피해자를 명시하여 법문에서 명시한 주체 이외의 자에 의한 열람·등사를 제한함으로써 소년보호사건의 비공개원칙을 보장하려고 했다(안 제30조의2).⁵⁷⁾

가해소년이 가정법원심리에 소환되기 전 사법절차과정에 누적된 심리관련 기록

과 자료에는 가해소년의 비행사실 관련 수사기관의 사건조사,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정에 분석된 가정환경, 심리검사, 비행요인, 요보호성의 판단과 분류심사관의 처분의견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조서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소년심판규칙 제28조 제2항) 가정법원판사의 가해소년에 대한 일방적인 처분결정의 근거인 소년심판의 기록을 피해자와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에게 열람·등사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심리조서 중 개인정보에 민감한 자료인 가해소년의 가정환경, 보호자의 신상자료 등을 제외하고 해당사건의 비행사실과 관련된 기록만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면 가해소년의 개인이나 가족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관련 기록의 열람·등사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가해소년 중심의 가정법원판사의 일방적인 처분결정의 관례를 벗어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충분한 의견과 진술을 반영한 처분결정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소년법 제30조의2의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는 자를 보조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일본의 소년법은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사건의 성질, 조사와 심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불허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방식을 원용하려면 피해자 또는 변호인에 상응하는 보조인에게도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야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정당한 사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어서 대부분 허가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이 문제될 수 있겠으나 보조인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또는 변호인도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⁵⁸⁾ 소년범죄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건에 대해 소년사법절차의 결정에 순응했던 현재까지의 소극적인 입장을 변화시켜 가해자의 비행사실기록을 적

5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 2021; 박찬걸, 앞의 논문, 144면.

58) 정수경변호사, “소년 사법제도 개선방안”, 『소년 사법제도 개선방안 입법포럼』, 2019, 32-33면.

극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는 입법제도 개선을 한다면 소년범죄피해자의 사법법 절차과정에 지위를 향상하는데 유효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3절 피해자의 정보접근과 제공 받을 권리 부여

1. 현행 규정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정보접근의 제한의 근거는 「소년법」 제68조⁵⁹⁾로 볼 수 있다. 이 규정은 “소년보호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의 구분에 따라 사건처리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년범죄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장에 근거하여 사건 관련 정보의 획득과 접근이 가능한 일반 성인사건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며 형법상 만14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지만 형사책임연령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결정을 한다. 범죄소년은 범죄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우범소년이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을 하는 소년,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자로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59) 소년법 제68조(보도금지)

- ①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할 수 없다.
- ②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
 2. 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생자
 3. 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말하다. 범죄소년이란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범죄소년, 촉법소년 또는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장은 관할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를 하거나, 가정법원에 직접통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소년사건도 경찰에 의한 처리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지만 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절차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찰은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직접 소년법원에 송치해야 한다.(소년법 제4조)⁶⁰⁾ 경찰이 초기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훈방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⁶¹⁾(형사소송법 제196조) 그러나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 하지만 사건이 경미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훈방조치를 하게 된다. 경찰로부터 송치를 받은 검찰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⁶²⁾(소년법 제49조) 재범가능성이 적고 선

60)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 1. 죄를 범한 소년
 -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61) 형사소송법 추가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 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62) 제49조(검사의 송치)

-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②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도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⁶³⁾을 하기도 한다.(소년법 제49조의3) 이와 같은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소년범죄피해자의 정보접근과 제공이 차단된다.

형사사법체계에 포섭된 소년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검사가 소년범죄의 특성에 대한 보호관찰소, 경찰, 아동보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나 검찰은 잦은 인사이동 및 전담 변경으로 소년범죄에 대한 전문성 축적이 곤란하다. 2007년 소년법 개정 시 검사결정전 조사를 마련하여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소년부 송치 등의 결정을 할 때 소년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할 것을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 분류 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게 되는데 그 활용 또한 매우 저조하며, 검사 인사의 구조적 취약성과 함께 검사의 소년사건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심화되었다.⁶⁴⁾ 결정전조사 종류별 접수 현황은 2020년에 접수된 결정전조사 중 가정보호사건이 8,685건(48.8%), 소년보호사건이 7,644건(42.9%)으로 두 종류의 조사가 전체 결정전조사의 91.7%를 차지하였고, 아동보호사건이 1,426건(8.0%), 성매매보호사건이 51건(0.3%), 기타가 7건 등이었다. 최근 7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결정전조사 접수건수는 2014년 12,373건에서 2020년 17,813건으로 44% 증가하였다. 특히, 가정보호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져, 2020년 가정보호사건의 접수사건은 2014년보다 2배 이상, 아동보호사건은 54배 이상 증가하였다. 소년보호사건은 2015년에 8,84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매년 7,000건~8,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성매매보호사건은 2017년 32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계속 감소하였다. 사범별 접수현황은 2020년 접수된 결정전조사를 사범에 따라 구분하면, 폭력사범이 10,923건(61.3%)

6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란 1. 검사가 범죄소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민간인인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받을 것 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소년의 선도, 교육과 관련된 단체, 시설에서 상담, 교육, 활동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그 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하지 않고 선고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

64) 법무부,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및 소년피해자 지원 강화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7차 권고 발표, 2020, 5-6면. 참조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사범 2,379건(13.4%), 절도사범 1,964건(11.0%), 교통사범 1,024건(5.8%), 사기횡령사범 662건(3.7%), 성폭력사범 612건(3.4%) 등이었으며, 그 외 사범은 150건 미만이었다. 최근 7년간의 사범별 접수 추이를 살펴보면, 폭력사범은 2014년 6,174건에서 증가추세를 보여 2020년에는 2014년 대비 76.9% 증가하였다. 기타사범은 2016년 이후 10~13%를 차지하고 있고, 절도사범과 경제사범은 2015년에 각각 3,079건과 75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증감을 반복하였고, 강력사범은 매년 1% 미만으로 2014년 0.9%, 2019년과 2020년에는 0.2%와 0.3%를 차지하였다.⁶⁵⁾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는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규정취지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⁶⁶⁾는 “수사 관련 사항인 수사기관의 공소제기·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불송치·수사중지·이송 등 결과, 공판진행 사항인 공판기일·공소 제기된 법

65)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통계분석』, 2021.

66)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 ① 법 제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이하 “형사절차 관련 정보”라 한다)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9.>
 1. 수사 관련 사항: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과
 2. 공판진행 사항: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3. 형 집행 상황: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4. 보호관찰 집행 상황: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감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 ②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형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 구두,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원·판결 주문·선고일·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형 집행 상황인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보호관찰 집행 상황인 관할 보호관찰소·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과 같은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는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규정취지에 따라, 경찰의 경우는 범죄피해자 보호규칙 제11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사건의 접수, 진행경과 및 처리결과 등의 수사 진행 사항” 67) 등을 알려 주도록 하고 있고, 검찰의 경우는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9조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사실,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지대상 사건은 같은 지침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범죄피해자 등으로부터 신청이 있거나 통지가 필요하다고 검사가 결정한 사건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위 규정은 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실무상 모든 소년보호사건에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소년법은 제31조의2에서 가정재판소는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에 관한사건에 대하여 종국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사건의 피해자 등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통지를 하는 것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상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인에게 소년 및

67) 제11조(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 ① 경찰공무원은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건의 접수, 진행경과 및 처리결과 등 수사진행사항
 2. 피해자 진술권, 형사 보좌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배상명령제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제도 등 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4.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 단체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제1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은 「범죄수사규칙」 제204조제5항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거, 결정의 연월일,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⁶⁸⁾ 가정법원심리는 형사재판과 달리 검사가 심리에 구성원이 아니며 가정법원판사, 촉법소년 또는 범죄소년 측 보조인, 촉법소년 또는 범죄소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년재판의 이러한 형태는 소년의 보호가 소년재판에서는 가해소년의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소년사건의 재판의 중점사항은 양형 결정과 범죄사실의 파악보다는 소년의 성행,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대상의 형사철자와 같은 대립적 구조보다 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구조가 소년의 개선·교정을 위한 최적의 보호처분 결정을 위하여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정법원심리에 참석하는 구성원을 보아도 소년범죄사건의 가해소년에 대한 충분한 인권적 심리환경을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편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균형적인 절차가 결여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와 보호자의 소년범죄로 발생한 심리적·물리적 피해를 대변하고 이에 충분히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처분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검사나 변호인, 법정보조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균형적인 구조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구조는 가정법원심리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는 인지할 수 없는 소외된 상태에서 소년사법절차를 진행되고 있다는 불공정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강화된 소년범죄피해자의 해당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보권이 인정되는 근거와 성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피해자의 정보권의 인정은 현재까지 유지된 소년보호주의 이념, 「소년법」 제68조의 정보권의 한계, 그리고 가해소년과 가족의 예민한 신상정보공개문제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정보권의 근거는 생명권(헌법 제10조), 알 권리(제21조), 재판절차 진술권(제27조 제5항)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생명권(헌법 제10조)⁶⁹⁾에 근거 「범죄신고자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범죄 피해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범죄 신고자에게 체포·구속 및 석방

68) 차경환, 앞의 논문, 229-230면.

69) 헌법 제10조 (생명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과 관련된 처분내용, 재판 및 신병에 관련된 변동상황을 통지하는 것은 보복범죄를 방지하기 위함” 규정하고 있다. 해당사건의 관련정보의 제공은 피해자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항의 정보에 관해서는 이를 최우선적으로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

둘째, 알권리(동법 제21조)⁷⁰⁾에 따라 재판절차에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그 절차를 감시한다는 측면에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피해자의 해당사건에 대한 공정한 법적용이 실현되고 있는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이라는 측면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인정해야 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재판절차 진술권(제27조 제5항)⁷¹⁾에 따라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인데,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재판절차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볼 수 있다. 재판절차 진술권은 피해자의 정보권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조문의 체계상 형사절차 참여보장(제8조)에 이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제8조의 2)을 배치하고, 구체적인 사건관련 정보의 제공을 범피법 제8조에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제10조)에 규정한 것도 이러한 취지인 것으로 생각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은 생명권을 제외하

70) 헌법 제21조(알권리)

-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④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1) 헌법 제27조(재판절차 진술권)

-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면, 「헌법」의 청구권적 기본권인 청원권(헌법 제26조)과 재판받을 권리(동법 제27조)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재판받을 권리는 성격상 형사피고인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피해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실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기본권으로서⁷²⁾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고, 법률에 의하여 그 행사절차가 구체화되어야 비로소 권리로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⁷³⁾ 따라서 피해자가 정보제공을 청구할 권리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법자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⁷⁴⁾ 그것이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⁷⁵⁾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를 비공개로 하는 취지의 연장선에서 심리진행정보 제공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검사의 참여가 배제되고 공판이 아니므로 검사가 그 심리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없다 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리진행정보를 알게 되는데 많은 곤란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4. 7. 14. 강기정 의원 등 12인이 제출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134)은 2014. 11. 12.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동 법안의 제안이유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소년범죄가 치밀해지고 흉악해지면서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가 입는 피해가 형사사건으로 인한 피해 못지않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사건과는 이원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별도로 사건 처리에 관한 피해자 통지제도가 없어 피해자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인 점을 고려해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면 소년부가 해당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 기일·장소, 심리 결과 등을 그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해야 한다고 하였다.(안 제30조의3 신설). 발의된 법안의 구

72)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5, 869면; 성낙인, 「헌법」, 법문사, 2015, 1563면.

73) 김혁, 앞의 논문, 233면;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597면; 정희철, 「기본권의 헌법」, 여산, 2013, 663면; 헌법재판소 1999. 9. 16. 98헌마75.

74) 김혁, 앞의 논문, 233면; 이부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법학연구」, 제17집 제2호, 인하대 법학연구소, 2014, 55면;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4. 헌바81.

75) 김혁, 앞의 논문, 233~235면.

체적 내용은 동법 제30조의3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를 신설하여 “소년부는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 기일·장소, 심리 결과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⁷⁶⁾ 소년법의 이념이 소년보호의 목적은 소년의 보호와 교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는 가해소년의 보호와 피해자의 보호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특히 가해자 소년의 충분한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병행하기 위해서 피해자 소년에게 충분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소년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재를 긍정하더라도 소년보호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가 곧바로 격상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소년법의 특수성 내지 독자성을 강조할 경우 소년사법 내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장이 아닌, 단순한 ‘배려’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⁷⁷⁾ 이러한 입장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절차의 특수성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권리로서의 정보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적어도 정보제공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정보권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검사나 피해자를 항고권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소년법」 제43조 제1항과 「소년심판규칙」 제53조가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소년심판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동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⁷⁸⁾ 그렇지만 소년보호주의에 입각하여 피해를 준 대상이 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제한되고, 헌법상의 평등권에 예외로 보는 것은 소년사법절차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불균형적인 지위와 권리를 부여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앞서 말한 N번방, 부산 여중생 집단성폭

7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 2021; 박찬걸, 앞의 논문, 134면.

77) 김혁, 앞의 논문, 232면; 이승현, “한국 소년사법에서 피해자 배려의 문제”, 『소년보호구』 제13호, 2009, 142면.

78) 김혁, 앞의 논문, 231~232면.

행, 서울 관악산 또래 집단폭행, 2018년 11월 경 인천중학생추락사 등과 같이 소년범죄의 결과 발생한 피해는 성인범죄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지금의 청소년 범죄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받은 당사자에게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범죄결과로 유발된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의 심각화와 공정한 법집행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헌법」 11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내용인 차별대우의 금지, 사회적 특수 계급제도의 금지, 특권제도의 금지가 법절차에서 잘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⁷⁹⁾ 전술한 헌법소원 심판의 보충의견 및 반대 의견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소년심판절차에서도 검사에게 상소권을 인정하여 이를 통해 소년심판절차의 피해자도 간접적으로 상소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소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입법자가 소년심판절차에서 보호처분의 결정 등에 대해 검사가 상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충의견⁸⁰⁾과 “범죄피해자에게 항고심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년심판절차의 피해자를 형사소송절차의 피해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대의견(헌법불합치)⁸¹⁾은 이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⁸²⁾

2. 개선방안

소년사법절차의 소년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접근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7. 12. 11.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소년법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미성숙한 소년의 책임능력 한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범의 경우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고 형사처분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행법은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기반이 될 소년의 보호를 위해 그 환경을 조정하

79) 김학성, 「헌법개론」, 박영사, 2012. 369면;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1121면;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5. 583면.

80) 재판관 이동홍의 보충의견.

81)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헌법불합치)

82) 김혁, 앞의 논문, 232~233면.

고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소년범죄가 더욱 치밀해지고 흉악해지면서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가 입는 피해가 형사사건으로 인한 피해 못지않게 커짐에 따라 피해자 권리보장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소년법의 보호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이 준용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통지 규정이 없고, 해당 보호사건의 심리도 비공개로 되어 있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처리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사건의 심리에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4조제2항 단서), 피해자 등이 신청한 경우 소년의 전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의 기일·장소, 심리결과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다(안 제30조의3 신설).⁸³⁾

기본적으로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심리진행정보를 원칙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심리적인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심리 진행 정보 통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심리 기일 참석의 원칙적 허용, 진술권의 실질적인 보장, 기록 열람·등사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개선된다면 일반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등 판결등본 송부 신청 정도의 제도나 피해자의 진술권 등에 대한 안내·고지 정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위와 같은 입법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리진행정보통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⁸⁴⁾ 소년의 성장과정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건관련 정보가 가해소년의 명예권이나 성장발달권의 본질적 침해를 초래하지 않는 대표적인 정보이다. 피해자에 대한 사건정보제공은 일반적인 정보 공개와는 달리, 정보제공의 대상자 및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소년사법 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정보권과 가해소년의 성장발달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방안은 피해자에게 심판결과를 통지하거나, 요보호성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사건기록의

8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 2021; 박찬걸, 앞의 논문, 146면.

84) 정수경변호사, “소년 사법제도 개선방안”, 『소년 사법제도 개선방안 입법포럼』, 2019, 32~33면.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년사법절차에서도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⁸⁵⁾

제4절 피해자 중심의 화해절차

1. 현행 규정

소년보호사건의 화해권고 규정인 소년법 제25조3⁸⁶⁾에는 화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결정하는 것도 소년부 판사이며, 화해의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도 소년부판사로 규정되어 있다. 피해소년과 피해소년 측의 보호자나 참고인은 단지 화해를 결정한 소년부판사의 결정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존재일 뿐이다.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소년법」 제25조의2에 피해자진술권을 신설한 바 있다. 법조문의 표현에서 피해자의 참여가 강제되는 것처럼 오인되어 상당 수 언론보도에서 지적되기도 하였으나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화해권고절차 참여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어디까지나 판사의 권고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나 가해자에게도 모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발성·자율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운영의 지혜가 필요한 제도이고 다른 민사조정이나 가사사건의 조정과 같이 판사가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사실상 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도 있어 보인다.⁸⁷⁾ 현재 가정법원심리는 판사의 판단에 의한 화해권

85) 김혁, 앞의 논문, 237~238면.

86) 소년법 제25조3(화해권고)

-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 ③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제1항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87) 정희철,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의 운영방안과 문제점”, 『소년보호연구』 제17호, 2011, 108면.

고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며, 화해의 주체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이미 심리적·경제적 피해감정이 깊어진 상태가 대부분인 관계로 소환을 실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판사의 일방적인 화해조정이 된 후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게 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형사재판과 다른 화해절차는 피해자가 납득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가해자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반성과 사과의 절차없이 판사의 독단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정작 가해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경제적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호처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년법」 제34조에 다른 처분결정이 진행되거나 종료된 후에도 재비행을 하는 소년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소년사건은 일반적으로 경찰 입건 이후 검찰단계를 거쳐 형사법원에의 공소제기 또는 법원 소년부 송치 절차를 거치게 되고, 법원 소년부 송치 이후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보호관찰 등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통상적으로 경찰 입건 이후 집행단계까지 평균 6~내지 7개월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에 재범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⁸⁸⁾

2. 개선방안

현행 화해권고제도는 소년보호사건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년형사사건에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도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은 수사단계에서 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반면에 현행 화해권고제도는 법원 단계에서만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의 화해권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가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검찰단계에서의 검사결정 전 조사 의뢰 시 화해권고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도 현실적 방안으로 검토할 만하다.⁸⁹⁾

소년심판절차의 피해자를 형사소송절차의 피해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또한 기존 소년심판절차에서 이루어지는 화해권고를 검사의 수

88) 법무부,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및 소년피해자 지원 강화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7차 권고 발표, 2020, 4~5면.

89) 정희철, 앞의 논문, 108면.

사단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하고, 검사에 의한 화해권 고의 도입을 필요성을 제안한 소년법개정법률안으로 2019. 2. 19.자 김상화 의원 안에 의하면, 제49조의4(검사의 화해권고)를 “① 검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소년이 제1항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제49조의3에 따른 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라고 신설하고 있다.⁹⁰⁾ 법원 단계에서 화해를 진행할 경우 이미 경찰수사단계 그리고 검찰수사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범죄로 인하여 피해감정이 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만한 화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소년부 판사가 소년과 피해자에게 화해를 직접적으로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민간기관이나 개인·단체에 화해업무를 위탁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는 절차로⁹¹⁾ 개선하여 피해자가 한결 편안한 분위기에서 화해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⁹²⁾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자의 참석이나 의견진술 없이 가정법원 판사의 일방적인 주도하에 가해자의 화해와 반성의 자세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형적이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불합리한 화해권고절차는 범죄결과로 정신적·경제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법원판사의 일방적인 화해절차진행을 개선하기 위해 중립적인 화해절차진행을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가해소년의 진정성 있는 화해를 유도하고 아울러 심리적·경제적 피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화해절차를 진행한 민·관전문기관은 그 결과자료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심리진행과 처분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심리기록과 자료로 활용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충분한 피해보상과 부정적 법감정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소년은 비행의 결과에 대한 경각심과 재비행을 억제하는데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9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 2021.; 박찬걸, 앞의 논문, 149~150면.

91) 황순평, “피해자의 소년법상 지위 - 개정법의 피해자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경찰학 연구』 제9권 제1호(통권 제19호), 2009, 177~179면.

92) 정수경변호사, 앞의 발표문, 34면.

제5절 피해자의 항고권 인정

1. 현행 규정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항고규정으로 소년법 제43조⁹³⁾이며,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동법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동법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법령이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이 오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가해소년 또는 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규정에 피해소년 또는 보호자·보조인·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의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항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소년보호사건 심판은 법원의 직권주의 심리 방식에 따라 진행되어 보호소년은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심리의 객체가 되며(이 점에서 피해자 측의 의견진술권에서도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가정법원심리의 목적이 가해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범죄사실의 내용 및 양형 결정보다는 소년의 성행,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의지나 보호능력 등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소년의 개선·교정을 위하여 최적의 보호처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절차에서와 동일한 항고제도⁹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소년보호사건 심판이 피해자와의 이해관계의 다툼의 장

93) 소년법 제43조(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를 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이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94) 형사소송법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진행하기 위해 검사선의주의 아래에서 검사는 이미 소년부 송치결정에 대해 우선적 판단을 내리는 등 기타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반면 법원은 송치 받은 사건을 심리하여 소년에게 적합한 보호처분의 종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보호처분의 종류와 결정의 바탕에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보호조치 또는 교육적 조치라는 후견인적 배려가 깔려 있다. 이러한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해 피해자 측이 직접 또는 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항고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미 처분이 결정된 비행에 대한 재심리를 허용하는 것이며, 형사소송 절차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 그 항고권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건 2011헌마232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정의견은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일방 당사자인 검사가 상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피해자도 간접적으로 검사를 통하여 상소 여부에 관여할 수 있음에 반하여, 소년심판절차에서는 검사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도 상소 여부에 관하여 전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양 절차의 피해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것임에도 서로 다르게 취급되고 있으므로 차별취급은 존재한다.⁹⁵⁾ 나아가 차별취급에 합리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년심판절차의 전 단계에서 검사가 관여하고 있고, 소년심판절차의 1심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권이 보장되고⁹⁶⁾ 있다. 또한 소년심판은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소년에 대한 후견적 입장에서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하기 위한 심문절차이며, 보호처분을 함에 있어 범행의 내용도 참작하지만 주로 소년의 환경과 개인적 특성을 근거로 소년의 개선과 교화에 부합하는 처분을 부과하게 되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일반 형벌의 부과와는 차이가 있다.⁹⁷⁾ 그리고 소년심판은 심리의 객체로 취급되는 소년에 대한 후견적 입장에서 법원의 직권에 의해 진행되므로 형사소추권을 행사하는 검사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 소년심판의 당사자가 아닌 검사가 상소 여부에 관여하는 것이 배제된

95) 박찬걸, “보호처분의 결정 등에 대한 항고권에 검사 또는 피해자 등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의 타당성 여부-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2011헌만232 결정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2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3, 135면.

96) 박찬걸, 앞의 논문. 136면.

97) 정희철, “소년심판의 항고권자와 항고절차의 이론적 쟁점”, 『아주법학』 6권 제2호, 2012, 406면.

것이다. 위와 같은 소년심판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을 보면 소년심판절차의 전 단계에서 검사가 관여하고 있고, 소년심판절차의 1심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권이 보장되고 있으며, 소년심판절차는 그 성격, 목적, 구조 등에서 형사소송절차와는 차이가 있으므로⁹⁸⁾, 소년심판절차에 있어서 검사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년심판절차의 피해자를 형사소송절차의 피해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검사에게 상소권이⁹⁹⁾ 인정되어 이를 통해 소년심판절차의 피해자도 간접적으로 상소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소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입법자가 소년심판절차에서 보호처분의 결정 등에 있어 검사가 상소할 수 있도록 검사의 상소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입법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⁰⁰⁾

반대의견(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은 범죄행위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가 소년법상 특별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소년(소년법 제48조)이어서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심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아무런 불복수단이 없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¹⁰¹⁾ 또한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제1심 절차 못지않게 항고심 절차에서도 피해자 등의 진술권을 통하여 재판진행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¹⁰²⁾ 하는데 형사소송절차와는 달리 소년심판절차에서는 제1심에서만 피해자 등의 진술권이 보장될 뿐 제1심 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권마저 봉쇄되다 보니, 피해자로서는 검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항고하여 항고심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범죄피해자가 항고심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년심판절차의 성격, 목적, 구조 등을 이유로 소년심판절차의 피해자를 형사소송절차의 피해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98) 박찬걸, 앞의 논문, 136면.

99) 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자)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100) 강지명,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24권 제3호, 2012, 116면.

101) 박찬걸, 앞의 논문, 138면.

102) 박찬걸,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소년보호연구』 제22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3, 197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년심판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를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해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¹⁰³⁾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¹⁰⁴⁾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고하는 경우, 기존의 항고권자인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항고를 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¹⁰⁵⁾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여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함이 상당하다¹⁰⁶⁾라고 하였다.

소년부판사는 심리객체인 가해소년의 사건기록을 분석하여 증거를 검토하고 가정법원조사관, 소년분류심사원 소속인 분류심사관, 보호관찰소 조사관에게 적절한 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경찰 등 행정기관, 학교, 병원 등에 보충수사를 포함한 원조·협력을 구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이나 보호처분 결정, 형사법원에서의 송치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소년심판절차는 법원의 직권주의적 심리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대한 엄격한 증거조사절차와 방식, 증거법칙이 규정되어 형사소추권을 행사하는 검사의 관여하며 항고권을 가지고 있다. 법원의 직권주의적 심리구조인 소년심판구조의 당사자가 아닌 검사에게 항고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피해자 및 피해자 측의 법정대리인에게 항고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런 반면에 가해자에게는 항고나 재항고의 권리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는 가정법원의 심리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항고할 수 있는 권리도 없는 것이다.

103) 헌법 제11조(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04) 박찬걸, “보호처분의 결정 등에 대한 항고권에 검사 또는 피해자 등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의 타당성 여부”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2011헌마232 결정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2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3. 138면.

105) 박찬걸, 앞의 논문, 138면.

106) 헌법재판소 2012. 7. 26. 2011 헌마232, 소년법제43조 위헌확인

2. 개선방안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 동법 제32조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동법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제1호)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제2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으며 (제43조 제1항),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제43조 제2항). 소년심판절차의 피해자를 형사소송절차의 피해자와 달리 취급하는 항고권의 개선을 제안하는 법률안으로 2019. 2. 19.자 김삼화 의원의 소년법개정법률안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안에 의하면, 제43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② 제19조에 따른 심리 불개시의 결정 또는 제29조에 따른 불처분결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변호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다.¹⁰⁷⁾

현행 소년심판절차는 가해자가 소년이라는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가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을 원칙적으로 박탈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소년심판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진술권이 보장될 뿐¹⁰⁸⁾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로서 이익을 제기하거나 진술할 기회조차 봉쇄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항고심 절차에서도 피해자 등의 진술권을 통하여 재판¹⁰⁹⁾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규정은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야기하고 있다. 사건의 본인·보호

10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ikms.assembly.go.kr/bill/), 2021; 박찬걸, “소년사건 피해자의 인권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 -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호, 2021, 138~139면.

108) 박찬걸, “보호처분의 결정 등에 대한 항고권에 검사 또는 피해자 등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의 타당성 여부”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2011헌만232 결정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21호, 한국소년연구정책학회, 2013, 138면.

109) 박찬걸,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소년보호연구』 제22호, 한국소년연구정책학회, 2013, 197면.

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항고권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다른 일방인 검사·피해자·변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심리불개시 결정’, ‘불처분결정’, ‘보호처분취소의 결정’ 등에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항고권자와 항고의 대상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¹¹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7차 권고 발표 내용 중 범죄피해자가 소년(19세 미만)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절차상의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언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높으므로 소년피해자 변호사제도를 도입하고, 검사가 범죄의 성격, 피해자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소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¹¹¹⁾

제 5 장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제1절 소년범죄 피해자의 보호이념

1. 시대적 배경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소년의 범죄 등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기 위해 1958년 7월 24일 「법률 제489호」로 제정된 「소년법」은 국친사상과 교육사상에 이론적 근거인 소년보호이념 아래 열악한 환경의 비행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육성을 위해 적절한 처우를 위한 법적용을 시행하였다. 성인범죄자와 달리 비행청소년의 심신의 미성숙, 가정과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한 비행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점, 교정의 가능성이 높은 점이 고려되어 형벌보다는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적절한 처우에 초점을 맞추어 소년사법절차는 운영되어 왔다.¹¹²⁾ 「소년법」의 제정

110) 정수경변호사, “소년 사법제도 개선방안”, 『소년 사법제도 개선방안 입법포럼』, 2019, 34-35면.

111) 법무부,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및 소년피해자 지원 강화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7차 권고 발표, 2020, 11면.

112) 원혜옥, “소년사건에서의 보호이념과 국선보조인제도”, 『형사정책』 제28권 제3호, 2016,

이후 범죄소년의 소년사법절차상의 지위와 권리는 소년보호주의 이념과 더불어 인권보호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렇지만 소년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소년의 대한 법조계, 학계의 전문가들의 문제제기는 간과되어 왔다. 최근 소년사법절차의 지위와 권리를 악용한 촉법소년의 심각한 비행, 소년범죄의 잔혹성·흉포화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상황을 언론과 청와대 청원을 통해 공개되어 대중의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으며, 엄벌에 처해한다는 요구가 팽배하게 되었다. 소년보호주의 입각하여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적절한 처우를 목적으로 하는 가해자 중심의 소년사법절차가 시대적 흐름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제3장 피해자 권리를 강화한 외국의 입법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미국의 피해자의 권리 강화, 일본의 피해자 지위를 향상하는 소년법 개정, 뉴질랜드의 피해자 중심의 화해절차와 같은 피해자 중심의 사법절차를 구현하는 사법개혁이 이루어진 이유는 범죄소년의 교정과 재활에 중심을 둔 사법절차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의 심각화와 증가, 피해자의 외면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2. 피해자에 대한 인식전환

행위자의 과거 범죄행위의 증명에 무게중심을 두는 일반의 형사소송절차에 비하여 소년의 현재 요보호성을 중시하는 소년보호절차에 있어서, 과거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피해자의 입장과 심정을 고려할 여지가 그만큼 협소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¹¹³⁾ 조사와 심리의 주된 이유가 과거 범죄행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있는 일반 형사소송절차는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 형벌권의 존재여부와 그 범위를 정함으로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소년보호절차의 경우 형사절차와 같이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여 법적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비행에 대한 적절한 처우인

12-14면.

113) 황순평, “피해자의 소년법상 지위-개정법의 피해자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9권 제1호(통권 제19호), 166면.

보호처분 등을 하여 소년이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교정·갱생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년심판에서는 소년의 요보호성을 인식하는 단서로 비행이 존재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비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로서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의 결정을 하게 되는 주된 근거자료는 비행사실보다는 현재의 요보호성의 여부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소년법」의 철학과 정신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것은 논란이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 불가침의 것으로 하고 소년의 보호를 위해서는 본래 필요한 수사 혹은 피해자의 정당한 이익을 희생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러한 생각이야말로 먼저 비판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의미에서도 소년사법에 있어서의 사법적 기능과 복지적 기능과는 상반되는 측면을 가지는 것으로, 소년사건의 수사, 심판, 처우 결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소년의 보호의 요구와 사회공공의 안전의 요청과의 조화를 어디에 요구할지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소년의 구류를 필요로 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둘러싼 해석 운용에 있어서도 같은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사정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의 해당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그 판단에 있어서는 미결구금에 대한 인권보장 위의 문제 및 소년의 정서 보호의 점에 유의하면서도 피해자의 입장 즉 「피해의 심대·심각성, 보복의 우려, 피해 감정의 연화」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야 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¹¹⁴⁾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성인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입법과정 또한 가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절차의 개혁에서 시작된 점을 볼 때 범죄소년의 비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의 시각을 벗어나 권리의 주체라는 관점으로 전환¹¹⁵⁾하여 소년보호이념이 가해소년 뿐만 아니라 피해소년에게도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부여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14) 山名学, “少年審判と非行事実”, 『調研紀要』 52号, 1987, 47~48면.

115) 김혁, 피해자 중심적 소년사법·보호정책으로의 전환에 관한 시론, 『피해자학연구』 28권 제3호, 2020. 118~119면.

제2절 범죄피해자 보호법

1. 입법 배경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희생되거나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보호·지원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2005년 12월 23일 제정되어 2006년 3월 24일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법」(법률 제7731호)의 제정이유는 헌법 제30조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행형상의 인권 개선폭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개선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임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활동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요내용은 동법 제2조는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이념을 범죄피해자는 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당해 사건과 관련된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이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제5조 및 제7조 내지 동법 제11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기본시책에 대한 내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제의 구축 및 운영, 연구·홍보 및 교육,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고,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형사절차 참여 보장, 사생활의 평온 및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동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법 제15조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그 밖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정책 수립에 통일을 기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범죄피해학자 등 민간의 전문가를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 참여시키도록 했다. 동법 제17조는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내용으로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법률 제10283호」로 2010년 5월 14일 전부 개정되어 2010년 8월 15일에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정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이유는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와 범죄피해자를 구조하는 제도는 정책 방향이 같으므로 「범죄피해자구조법」을 이 법에 통합하고, 구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의 범위를 종래 중장해에서 장해 및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구조금의 지급요건에서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부분을 삭제하여 범죄피해자 구조의 범위를 확대하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국가가 일시적 보호시설 및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구조금 지급 제한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구조금액을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비하고,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한을 민법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연장하며,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각이나 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형사조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었다. 개정된 법의 주요내용은 동법 제3조 제4호 구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의 범위를 중장해에서 장해 또는 중상해까지 확대, 동법 제7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국가가 일시적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동법 제16조제1항 제1호 구조금의 지급요건에서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을 제외하여 범죄피해자의 구조범위를 확대, 법 제19조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구조금 지급 제한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법 제22조 구조금액을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18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책정, 동법 제25조 제2항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한을 범

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연장, 동법 제24조 및 동법 제27조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각이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 동법 제41조부터 동법제45조 형사조정 제도를 신설하여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을 조력하는 것이었다.

「법률 제10898호」로 2011년 7월 25일 개정되어 2011년 10월 26일에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정이유는 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자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며,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차등보조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 등을 기준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차등보조율 적용에 따른 추가적인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신설 안 제15조 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를 도입하되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으로 한정함으로써 평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평가 및 제외대상은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신설 안 제20조 제3항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 신설 안 제26조의2, 신설 안 제34조 제2항 보조사업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사업의 회계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신설 안 제31조·부칙 보조금의 사용 잔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도록 하되,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부칙을 신설하여 보조금 정산이 이 법 시행이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자반납을 의무화한 것이었다.

「법률 제12187호」로 2014년 1월 7일 개정·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법률 제12883호」로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되어 2014년 12월 30일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묻지마 범죄" 등 각종 강력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무고한 범죄에 희생되는 범죄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보호·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원과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지원은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액수를 상향 조정하며, 치료비 지원을 명문화하고,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원하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외에 종합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내실화하려는 것이었다.

「법률 제127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년 4월 16일에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정이유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으며, 주요내용은 법 제8조의2 국가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 법 제19조제7항 친족 간 범죄의 경우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법률 제14279호」로 2016년 12월 2일에 일부개정·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정이유는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이었다.

「법률 제14583호」로 2017년 3월 14일 일부개정·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이었다.¹¹⁶⁾ 이 법에 의한 대표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책으로 법 제8조 형사절차의 참여보장, 법 제8조의2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법 제9조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제4장 범죄피해자구조, 제6장 형사조정 등이 있다. 법무부 인권국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정책을 수립을 하여 시행하고 있다.

첫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로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1987년 범죄피해자구조법 제정 이래 구조금 지급을 시작하여 2010년 범죄피해자보호법 통합이후 지속적으로 그 지급 대상과 범조를 확대해왔다. 2020년 11월 적접체류 결혼이민자를 구조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고 구조금 분할지급제도를 도입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020년 한 해 동안 총 206건, 96억원의 구조금을 지급하여 범죄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범죄피해자 심리적 지원 강화로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설립하였다. 스마일센

1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1; 임예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검토 :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1호, 2021, 238면.

터는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담 및 심리평가, 심리치유 집단프로그램, 사회적 자원연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범죄발생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에게 임시거주가 가능한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7월 서울동부 스마일센터를 시작으로 2020년 제주지역 신규 개소함으로써 연도말 기준 전국 15개 센터를 운영 중이 있으며,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는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을 설치하여 전국 센터의 심리치료 서비스 전문성 강화, 표준 프로그램 개발·보급,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전국 스마일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스마일센터에서는 2020년 말까지 17,344명의 강력범죄피해자에게 심리치료(316,983건), 임시주거제공(24,469건), 사회적 지원(19,044건) 및 법률적 지원(23,13건) 등을 제공하였다.

셋째,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로 범죄피해자의 주거 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서 '10. 8월부터 시행되었고, 2020년 5월 주거지원 공고문 개정을 통해 주거지원 대상 범위에 디지털 성범죄를 추가하여 얼굴 공개, 보복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주거지원 대상자에 관하여 과실에 의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주거지원 공고문을 개정하였다. 주거지원은 범죄로 주거를 상실하거나 보복위험 우려, 친족 간의 범죄 등으로 새로운 보금자리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20년에도 총 39가구가 주거지원을 받았으며, 향후에도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더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각지대의 해소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16. 4월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을 설립하였다. 법무부 장관과 직원 일동이 제1호 위탁자로 참여하여 3,000만원을 기탁하였으며, 이후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로 모아진 기탁금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20년에는 친부 성폭력 피해자, 학대피해 아동 및 친족 간

살인으로 가정이 파괴된 피해자 유가족 등 31명에게 총 1억 3,600만 원을 지급하여 2016년 출범 이후 총 104명에게 4억 8,1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하였다.

다섯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활동지원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봉사단체로서 2003. 9월 김천구미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시작으로 2017. 9월 부산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전국 지방경찰청 및 지청 단위별로 60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국범죄피해자 지원연합회 포함)가 활동 중이다. 센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센터별 활동실적에 따라 2020년도에 총 35억 6,86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각 센터에서는 피해자 상담 85,464건, 경제·의료 지원 18,416건, 신변보호 526건, 기타 17,715건 등 총 122,121건의 각종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섯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대국민 홍보강화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고통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무관심과 보호·지원의 소홀로 말미암아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신변위협 등 심각한 2차적 피해를 입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0년 한 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일곱 번째 다링안심캠페인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본 행사는 2014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범죄피해자와 가족,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와 일반 시민 등 2,500여 명이 참석하는 범국민적 행사이다. 다만, 2020년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과 달리 2020. 7. 8.부터 3주간 「방구석 다링, 방구석에서 힐링」을 주제로 하여 ‘너와 나 모두가 하나 되어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자’는 구호를 웹·모바일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전파하고, 참가자들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캠페인 기간 동안 웹·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벤트에 참여한 인원이 7,380명으로써 전년 대비 5,366명이 증가하였고, 인스타그램 계정 공유 인원만 1,393명으로써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제도에 대한 상시 접근 및 전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117)

그 외 검찰단계에서 검찰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지원은 피해자지원사업과 형사조정이다. 형사조정제도는 대검 예규인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에 따라 2006년 4월 시범실시된 이후 2007년 1월부터 전국 33개 검찰청에서 실시되었고, 2007년 8월부터는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형사조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제도는 지역사회가 사회적 갈등과 분쟁해결에 적극나서는 지역사회 분쟁조정프로그램의 하나로 검찰수사단계에서 고소사건 및 일반형사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 등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와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형사조정은 고소인, 피의자 등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고 있고, 각 지검장(지청장)이 위촉한 형사조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형사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형사조정위원 수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원하여 왔는데, 2019년 현재 전국적으로 2,904명의 형사조정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2015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형사조정의회건수 현황을 보면, 2015년 87,272건, 2016년 111,012건, 2017년 118,113건으로 2년 연속 증가하다 2018년에 117,014건으로 약간 감소하였고, 2019년에는 118,311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사건 중 형사조정에 의뢰된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형사조정의회율)을 살펴보면, 2015년 4.5%, 2016년 5.4%, 2017년과 2018년 각각 5.5%, 2019년 5.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 118,311건이 형사조정에 의뢰되었으나, 이 중 3,297건이 피의자 소환불능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되지 않았고, 진행 중인 사건이 17,881건이고, 완료된 사건은 97,223건이다. 형사조정이 완료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형사조정이 성립된 건수가 56,946건으로 56.7%의 성립률을 보이고 있다.¹¹⁸⁾

117) 법무부, 「법무연감」, 2021.

118)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20.

2. 피해자 보호관련 법규정

헌법은 피해자의 기본권리로서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며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제27조 제5항).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형사실체법상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로 해석되지 않는 자인 경우에도 문제되는 범죄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라면 헌법상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그 범위를 확대하여 왔다.¹¹⁹⁾

현행 소년법은 보호사건에 있어서 두 가지의 피해자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그 하나는 피해자의 권리보장 규정으로 소년부 판사로 하여금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대리인 등’이라 함)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다(제25조의2제1항). 다른 하나는 화해권고제도로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년에게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제25조의3).¹²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¹²¹⁾는 피해자등의 진술권에 대해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

119) 최영승,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소년피해자보호”, 『소년보호연구』 29권 제4호, 2016, 127~128면; 헌재결 1992. 2. 25. 90헌마91.

120) 최영승, 앞의 논문, 128면.

121)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07. 6. 1.>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 진술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증인신문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격은 과정과 자신이 피해에 대해 진술하여 가해자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는 것임으로 범죄신문과 같은 질문을 허용하는 것을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 신문은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진술하는 것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며, 피해자의 진술은 간접적 증거 형성에 대한 영향을 인정해 증인역할의 진술과 단순의견진술을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¹²²⁾

이러한 점에 헌법 제27조 제5항¹²³⁾ 재판절차진술권 등의 기본권보장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¹²⁴⁾ 이에 2015. 6. 29. 형사소송규칙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였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¹²⁵⁾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122) 박상식, “범죄피해자의 의견진술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2006. 36~38면.

123) 헌법 제27조(재판절차진술권)

-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124) 최영승, 앞의 논문, 128면; 오경식, “현행 형사소송법에 나타난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1호, 2009, 139면; 이승호,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진술권 제도에 대한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1호, 2009, 77면.

125)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다.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해자 진술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94조의 4¹²⁶⁾에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두 2007. 6. 1. 개정된 법에서 도입된 것들이다. 이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의 해당 규정은 소년형사사건의 준거법으로서 같은 절차에서도 당연히 준용된다(소년법 제48조).¹²⁷⁾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강화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은 가족폭력의 심각성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여 방치하지 않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육성 및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

126)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127) 최영승, 앞의 논문, 129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
 인 있는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이유로 개정 입법이 되었다. 동법 제
 1조는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
 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제2조 5호에 ‘피해자’
 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가정폭력을 알게된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
 사와 그 기관장·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
 장·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등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5
 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제6조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의 특례, 제8조 검사의 임시조치의 청구, 제8조의2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
 치, 제9조 검사의 가정보호사건의 처리특례, 제33조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의 진술권규정을 두었으며,
 제40조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접근행위 제한, 「전기통
 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제한·가정폭력행위
 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사회봉사 수강명령·보호관
 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의료기관의 치료위탁·상담소 등의 상담위탁, 제55조
 2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¹²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시장·
 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영리법인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보호시설의 임무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시 보
 호하는 일,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수사
 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
 원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시행과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이다. 보호시설의 중

128) 최영승, 앞의 논문, 130면.

사자는 시설장, 상담원, 휴일·야간 및 긴급상황 대비 1인 이상 상시 근무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내용은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치료지원,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입소 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과 특별보호,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금지, 학령 아동이 인근 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치,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이다. 보호기간은 단기보호시설은 6월 이내이며,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필요)하고, 장기·외국인·장애인 보호시설은 2년 이내이다.¹²⁹⁾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학·학교 평가 및 학교 평가·인증에 반영하도록 대학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사건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 대한 발생 사실 통보,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및 여성가족부장관의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및 지정·보와 요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제·지원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삭제·지원하는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했다. 또한, 성폭력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불이익조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과 기관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수사기관에의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업무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 제1조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을 위한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제2조 3호는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고 지칭하고 있으며, 제3조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

129) 임예윤, 앞의 논문, 2021. 4, 238면;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 제8조;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http://www.mogef.go.kr/sp/hrp/sp_hrp_f004.do), 2021.

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7조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취학 및 취업지원, 제7조2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제7조3은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8조는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초치의 금지, 제9조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의 신고의무, 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운영, 제1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제18조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¹³⁰⁾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대상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한편,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의 목적에 대해 제1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호에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19세 미만의 자로, 제16조 피해자 등에 강요행위, 제24조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제25조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제34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제35조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36조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제37조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제38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제41조 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42조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제45조 보호시설, 제46조 상담시설, 제47조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¹³¹⁾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위기지원형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

130) 최영승, 앞의 논문, 131면.

131) 최영승, 앞의 논문, 131면.

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여성경찰관이 상주하고 있다. 주로 피해자 응급지원과 수사지원의 기능을 하고 있다. 아동형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아동, 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층적 정신 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 및 회복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은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이다. 통합형 해바라기센터는 위기지원형 해바라기센터와 아동형 해바라기센터가 통합된 지원센터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¹³²⁾

제3절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법

1. 소년피해자의 권리보호

소년피해자의 경우 성인에 비하여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받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나,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하면 성인과 소년에 대한 구분이 없고, 구조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¹³³⁾ 현행법에 의하면 2020년 12월에 발생한 인천 여중생 집단강간 사건의 피해소녀는 2달 이상의 치료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범죄피해자 구조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년법의 이념은 영미형의 국친사상과 대륙형의 교육사상으로 대별되어 왔다. 전자는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국가가 국민의 보호자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후자는 소년의 잠재적 발전가능성으로 인하여 성인과 달리 취급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성인과 같은 형벌을 부과하거나 형사적 처벌을 하기 보다는 교육을 통한 재활과 갱생을 위한 보호처분을 주된 내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념 이론사적 의미만 가지게 된 이유는 법치국가원칙의 확립으로 인하여 논의의 독자성을 포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년이 비록 미성숙한

132) 여성가족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http://www.mogef.go.kr/sp/hrp/sp_hrp_f003.do). 2021.

133) 법무부,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및 소년피해자 지원 강화권고”, 『법무·경찰개혁위원회』 제17차 권고 발표, 2020, 8면.

존재이지만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요보호성”은 소년법의 이념의 중심이고 근간이다. 이러한 이념은 소년범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소년범죄피해자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소년법이나 관련 법규는 외면하고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소년법의 이념에 중심인 “요보호성”은 소년보호사건에서 가해자인 범죄소년 뿐만아니라 피해자인 피해소년에게도 동일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¹³⁴⁾ 형사절차상의 일반성인 범죄피해자의 경우는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입법 이후 2008년 비영리민간사단법인인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를 설립하여 공공정책 및 입법활동¹³⁵⁾을 하여 제도개선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받아 피해자의 권리를 향상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반대로 소년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보호단체설립마저도 되어 있지 않아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공공정책과 입법을 위한 활동을 할 통로도 없다. 소년범죄 피해자는 일반 성인 피해자와 달리 인지·사고능력이 완전히 성장되지 않은 관계로 피해로 인한 충격과 고통, 후유적 증상이 굉장히 심각한 장애로 표현되는데 청소년의 자살사건이나 가출, 성매매와 같은 극단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범죄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가해자 중심으로 소년사법절차가 범죄소년인의 범죄억제기능도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피해자마저도 보호를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¹³⁶⁾

2. 입법의 필요성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자료를 보면 2020년도 접수된 전체 소송 건은 6,679,233건¹³⁷⁾이고, 비송사건은 12,158,917건으로 그 비율은 35대 65이다. 2020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보호 (재)항고·신청·집행감독 등 사건은 모두 57,551건으로 전체 사

134) 최영승, 「앞의 논문」, 127면; 정진연, “소년법의 이념과 보조인의 역할”, 『소년보호연구』 제4호, 2002, 172면.

135) 최영승,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합회의 지원활동평가 및 발전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2호, 2013, 119면.

136) 최영승, 앞의 논문, 127면; 최병호,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2006, 54면.

137) 대법원, 「사법연감」, 2021.

건의 0.3%, 전체 소송사건의 0.9%를 차지¹³⁸⁾하고 있으며,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8,590건이다. 최근 5년간 접수내역을 볼 때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한 해 동안 소년이 포함된 20세 이하의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 1,767,684건 중 97,547건으로 5.4%를 차지하고 있다. 범죄소년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20세 이하의 피해자라는 세부적 자료는 없지만, 소년범죄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제4장에서 전개한 소년사법절차의 개선방안인 소년범죄 피해자의 심리 기일의 참석에 대한 선택권 부여, 그리고 적극적인 진술권 보장, 심리기록의 열람·등사의 권리 확대, 사건관련 정보 제공(민감한 개인정보 제외), 심리개의 여부·심리 기일과 장소, 심판결과 통지, 가피해자 중심의 화해절차의 개선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구조를 할 수 있도록 소년범죄 피해자보호법의 입법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근거로 「소년범죄 피해자보호법」의 입법에 도입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2와 같이 재판과정에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보장하는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다.

둘째, 피해소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장과 같이 소년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실태조사, 연구, 교육과 홍보, 보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 재원의 조달과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소년범죄 피해자보호법」의 입법내용에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장과 같이 구조대상 소년범죄 피해에 대한 구조에 대한 규정, 제5장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설립을 지원 및 감독하는 규정을 두어 범죄피해자보호센터와 기존에 설립된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및 아동보호전

138) 대법원, 「사법연감」, 2021.

문기관과 연계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소년범죄 피해자보호법의 입법으로 국가에서 소년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는 물론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등을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범죄피해자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소년과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범위를 정해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을 피해를 당한 사람도 소년범죄 피해자로 보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종류인 피해자의 신변보호(신변보호조치, 가명조서, 피해자 보호시설, 임시안전숙소, 이전비,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범죄피해자 의견진술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 형사사법포탈과 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 제도,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주거 지원 제도, 경제적 지원 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 스마일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배상명령 제도,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형사조정 제도, 법률상담터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 「소년범죄 피해자보호법」에 규정하여 소년범죄 피해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넷째,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범죄발생 직후 국번 없이 112(경찰청)로 범죄피해를 신고하거나, 1577-2584(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1295(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지원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에게 권리 및 지원 제도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서’를 교부하고 있다. 안내서에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는 조사받을 부모, 배우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 참고인 자격으로 증거자료 제출 및 진술,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긴급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이나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원할 경우 검찰청에 형사조정 신청, 수사기관에 신청하여 해당 사건의 진행 처리결과 및 피의자 구속 여부 등 형사절차 진행

과 관련한 정보 제공,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피해자 국선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법률조력,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의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소년사법절차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소년범죄 피해자보호법」 입법내용에 필수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권리라고 본다.

다섯째,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공판일시, 재판결과, 피고인의 구속·석방여부 등의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으며, 부모·배우자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정예 동석, 아동·청소년 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은 범죄자와 대면하지 않는 증인신문의 권리가 있다.¹³⁹⁾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소년법」 규정에 따라 피해자 등 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년 심판 후의 통지 처우 상황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범죄 피해자보호법」 입법 내용에 가정법원 심리 후 처분결정된 소년의 처우 상황에 대한 정보인 입원 연월일 및 수용되고 있는 소년원의 명칭·소재지, 소년원에 있어서의 교육 상황, 소년원을 출원한 연월일, 임시퇴원 심리를 개시한 연월일, 임시퇴원을 허락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연월일, 보호 관찰이 개시된 연월일이나 보호 관찰 종료 예정 연월일, 보호 관찰중의 처우 상황, 보호 관찰이 종료된 연월일등을 통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피해소년과 가족 등의 헌법 제10조 생명권, 동법 제21조 알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본다.

여섯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는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형사조정을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인과 달리 범죄의 피해로 인해 발생한 후유장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능성이 높은 피해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보호사건에 뉴질랜드의 가족집단회의와 같이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피해자의 중심의 화해절차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초기단계인 경찰·검찰의 담당자가 신청해 민·관이 함께 화해절

139)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http://www.moj.go.kr/cvs/index.do>), 2021.

차를 진행하는 제도, 가정법원소년부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리조정절차를 신설하여 피해소년 측이나 가정부판사의 직권으로 신청하여 민·관이 함께 화해를 진행하는 제도가 요구된다. 소년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같은 민간전문기구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존의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재활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동안 사법기관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소년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더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마지막으로 소년피해자에 대한 범죄예방정책이나 형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정보를 세부적으로 집계한 법집행기관의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국가기관의 통계자료에서 피해자의 현황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이다. 대 대검찰청의 2019년 형법범계 피해자 연령별 통계자료를 보면 20세 이하, 15세 이하, 13세 이하의 소년피해자의 발생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사법연감은 소송사건의 접수에 대해 통계자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해자관련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는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의 현황을 싣고 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적용의 대상인 성인피해자의 항고사건 접수와 재기수사명령사건 및 자체재기 현황, 재기수사명령 사건 처리현황, 재정신청 및 처리현황, 배상명령제도의 배사명령사건 및 처리 현황,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건수 현황,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 및 처리현황, 스마일센터 지원 실적 현황, 치료비 지급 현황, 형사조정외뢰건수 현황,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실적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소년피해자에 대한 통계자료는 연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것이다.¹⁴⁰⁾ 「소년범죄 피해자보호법」의 입법을 하여 소년피해자의 연령별 분포뿐만 아니라 피해사건의 발생·접수, 피해자진술권의 신청, 화해절차, 심리조정, 처분결정·심리불개시·처분취소에 대한 항고, 피해자보호 및 지원현황 등에 대한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소년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40)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20.

제4절 소 결

국천사상과 소년보호주의 이념은 형법상의 죄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범죄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소년보호정책과 가해자 중심의 사법절차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가해소년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같은 피해자는 정책과 사법절차로부터 외면당했고 적절한 치료와 보호마저도 하지 않은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제2차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가해소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사법절차의 방향을 전환해 차별되었던 피해소년의 권리를 강화하여 균형을 맞추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2003년에 있었던 대구지하철참사 사건으로 피해자의 인식이 전환되면서 형사 절차상의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은 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사생활의 보호,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소년법에는 소년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기본이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소년법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소년법의 이념이 보호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육성이라는 방향을 소년범죄 피해자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하며, 둘은 서로 표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년법 제25조2의 규정된 피해자등의 진술권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어도 제한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정부판사의 결정이 없으면 진술의 기회가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판단된다. 피해를 입은 피해소년이 자신의 피해상황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가정부판사의 이해를 돕고 적절한 처분결정을 할 수 있는 심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소년법 제25조3의 화해권고절차가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감정이 격화된 심리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의결과 별도의 소년부판사 중심의 절차진행을 하고 있는 점, 화해의 성사여부를 가정부판사가 판단해 처분결정에 영향을 주는 점은 정작 피해를 입은 피해소년의 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동법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 규정을 두

어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하여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법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소년범죄 피해자의 특성 때문이라도 전문적인 기관과 연계하여 보호와 치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각한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일반법인 「범죄피해자보호법」 상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같은 기존의 여러 기구들과 연계한 것 같이 「소년법」에 소년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전담기구를 구성하여 관련 단체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범죄피해자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같이 「소년법」에도 가해소년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내용의 통지, 가해소년의 처분에 피해소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소년사법절차를 단계별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별법인 「소년법」의 가해자 중심의 사법절차로 부터 소년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법의 입법이 필요성을 제기한다. 「법무·경찰개혁위원회 제17차 권고 발표」 내용 중 소년피해자는 성인피해자와 구별하여 손쉬운 구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년범죄 피해자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정할 것과, 19세 미만인 사람이 범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건전한 성장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의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를 구조, 지원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하였다.¹⁴¹⁾

범죄소년이 경찰수사단계, 검찰수사단계, 법원의 심리를 기일을 앞두고 피해소년을 대상으로 보복성 재범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소년의 신변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법의 사각지대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김삼화 위원은 「소년법」 제18조 제1항¹⁴²⁾을 단서로 20대 국

141) 법무부,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및 소년피해자 지원 강화” 권고, 「법무·경찰개혁위원회」 제17차 권고 발표, 2020, 11면.
 142) 제18조(임시조치)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② 동행된 소년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회에 소년법개정법률안의 제출했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소년범죄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정의 및 보호 지원에 대한 규정하지 않고 소년범에 대한 교정 목적의 보호처분 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소년범에 대한 수사 절차 및 처분 절차 등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소년범죄 사건의 재범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규정을 신설하지 않은 점의 문제성을 제기하고, 현행법의 피해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년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초등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수사하는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과 소년범죄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전에 반드시 전문가로 하여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하려는 것이다. 「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구체적 내용으로 「소년법」 제18조 제1항 각호 외에 추가로 1호 피해자의 주거, 학교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제1호),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법」 제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제2호)를 신설하는 것이다. 제1호와 제2호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였다.¹⁴³⁾ 소년법이 일방적인 가해자 보호규정인 것을 볼 때 피해자의 보호에 필요성을 제시한 법안으로 볼 수 있다.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한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같이 특별법인 소년법에 상응하는 소년범죄피해자보호법 입법을 입법하여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책으로 형사절차의 참여보장,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소년범죄 피해자의 사생활이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소년범죄 피해자구조, 소년 심판조정 등을 규정함으로써 소년범죄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⑤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4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kms.assembly.go.kr/bill/), 2021.

제 6 장 결 론

피해소년의 권리의 보장이 미약한 소년사법절차는 피해소년에게 법집행에 대한 불신과 2차 가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가해소년이 자신의 비행을 통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이해하고 진성한 사과와 반성, 화해 그리고 책임의식을 성찰하는데 방해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심리에서 소년법 제32조에 규정된 처분이 결정된 후 처분을 집행하던 중에 또는 처분을 종료한 후 재범을 하여 다시 똑같은 사법절차를 통해 처분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사법절차의 비행억제기능과 재비행 억제기능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년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불균형적인 사법절차의 개선하여 소년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연한 조건인 소년이 가해자라는 이유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감소되는 것은 헌법 제10조 평등권, 헌법 제10조 생명권, 제21조 알 권리, 제27조 제5항 재판절차진술권 등에 대한 침해의 문제도 될 수 있다고 본다. 소년사법절차도 피해자의 절차보장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형사절차의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보장되는 피해자의 지위와 근접하게 법제도를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소년 사건의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소년의 보호와 피해자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가는 입법이 필요하다.¹⁴⁴⁾

소년보호주의에 입각한 가정법원심리의 비공개는 가해자인 소년에 대하여는 관용과 배려의 보호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방적인 심리 진행으로 소년범죄피해자의 소년사법절차에 대한 감정과 신뢰의 악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일참석과 의견진술의 선택권을 가정법원판사가 아닌 소년범죄피해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본다. 소년범죄 피해자의 정보권과 가해소년의 성장발달권의 균형을 위해 가해자의 성장과정을 포함한 성장과정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소년보호사건과 관련된 정보, 심리결과 및 결과 후의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보며, 정

144) 법무부,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및 소년피해자 지원 강화 권고”, 『법무·경찰개혁위원회』 제17차 권고 발표, 2020, 36면.

보제공의 대상자 및 범위를 정하여 요보호성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할 수 있도록 입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현행 화해권고제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감정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정법원 단계에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인 경찰수사단계, 검사결정 전 조사 의뢰 시 검찰단계에서 진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화해절차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민간기관이나 개인·단체에 화해업무를 위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년사법절차의 방법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의 소년심판절차에서 소년범죄피해자의 불복수단과 방어권의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피해자 본인·보호자·검사·피해자·변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심리불개시 결정’, ‘불처분결정’, ‘보호처분취소의 결정’ 등에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항고권자와 항고의 대상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입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소년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법에 상응하는 소년범죄피해자보호법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규정한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책으로 소년심판절차의 참여보장,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소년범죄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소년범죄 피해자 구조, 소년 심리조정 등을 규정하여 소년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본다.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소년법에 이념이 주로 가해소년에 치우쳐 보호처분을 결정했지만 시설내 처우인 소년원 수용을 마치고 임시퇴원, 만기퇴원 한 후 보호관찰을 이행하면서 재비행을 하는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내 처우인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학생 또한 보호관찰기간동안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소년사법절차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인권친화적인 소년사법절차의 방향을 전환해야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혹하고 냉정한 사법절차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회복적 사법절차에 근접한 가해소년이 피해소년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화해의 단계를 부과하는 진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가정법원 판사의 일방적인 심리진행이 아닌 피해소년 측의 목소리를 듣고 가해소년이 자신의 어떤 행동을 하였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책임에 대한 깊은 수용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심리절차는 재비행을 억제하는 진정한 인권친화적 사법절차라고 본다.

소년범죄 현황의 통계자료를 확인하고 현재까지 소년범죄피해자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사법절차의 적절성에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소년범죄피해자에 대한 통계자료에서 소년범죄 피해사건의 발생·접수, 피해자진술권의 신청, 화해 권고, 심판조정, 처분결정·심리불개시·처분취소에 대한 항고, 피해자보호 및 지원현황 등에 대한 통계를 포함시켜 소년사법절차의 정책수립과 결정에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소년사법절차의 인권친화적 요소와 공정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소년범죄 피해자의 지위과 권리를 강화하는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 문헌

<국내 문헌>

1. 단행본

- 김학성, 「헌법학개론」, 박영사, 2012.
 김재환,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3.
 배종대·이상돈·정승환·이주원, 「형사소송법」, 201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8.
 이재상·조균선,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9.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홍문사, 2021.
 오영근, 「소년법」, 박영사, 2021.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6.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0.
 정희철, 「기본강의 헌법」, 여산, 2015.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5. 202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5.
 정주형, 「형사소송법 강의안」, 윌비스, 2012.
 정웅석, 최창호 공저,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18.

2. 논문

- 김 혁, “뉴질랜드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최근 동향 및 그 시사점”, 『형사정책연

- 구」 제31회 제4권, 2020.
- 김재희, “양형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의 역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1호, 2013.
- 김 혁, “소년사건에서의 피해자 정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1호, 2016.
- 김 혁, “경찰의 촉법소년 조사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23호, 2010.
- 박찬걸, “소년사건 피해자의 인권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1호, 2021.
- 박찬걸, “보호처분의 결정 등에 대한 항고권자에 검사 또는 피해자 등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의 타당성 여부”, 『소년보호연구』 제21호, 2013.
- 박상식, “범죄피해자의 의견진술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2006.
- 신동주판사, “소년 사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편”, 『소년 사법제도 개선방안 입법포럼』, 2019.
- 임예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 검토;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1호, 2021.
- 이영란, “소년사법절차에 관한 연구 -소년경찰의 다이버전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15호, 2010.
- 이승현, “한국소년사법에서 피해자 배려와 문제”, 『소년보호연구』 제13호, 2009.
- 오성식, “현행 형사소송법에 나타난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1호, 2009.
- 오영근, “개정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2008.
- 이승호,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진술권 제도에 대한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1호, 2009.
- 이부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7집 제2호, 2014.

- 이재상·이호중,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정수경변호사, “소년 사법제도 개선방안”, 『소년 사법제도 개선방안 입법포럼』, 2019.
- 정희철, 「소년심판의 항고권자의 항고절차의 이론적 쟁점」, 『아주법학』, 2012.
- 정희철,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의 운영방안과 문제점”, 『소년보호연구』 제17호, 2011.
- 정진연, “소년법의 이념과 보조인의 역할”, 『소년보호연구』 제4호, 2002.
- 조지 모스라키스 저/김희균 역, “소년범죄에 대한 뉴질랜드의 가족집단회의: 정책과 현행 실무의 개관”,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2006.
- 차경환, “소년법상 피해자의 지위”, 『형평과 정의』 24집, 2009.
- 최병호,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2006.
- 최영승,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소년피해자보호”, 『소년보호연구』 29권 제4호, 2016.
- 황순평, “피해자의 소년법상 지위 - 개정법의 피해자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경찰학 연구』 제9권 제1호(통권 제19호), 2009.

3. 기타 문헌

- 대 법 원, 「사법연감」, 2020.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9.
- 법 무 부,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2021.
- 법 무 부,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및 소년피해자 지원 강화」 권고, 『법무·경찰개혁위원회』, 제17차 권고 발표, 2020.
- 법 무 부, 2019~2023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수립, 2018.
- 법 무 부, 「법무연감」, 2021.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20.

<국외 문헌>

1. 영미문헌

Andrew Becroft, “Youth Justice - The New Zealand Experience Past Lessons and Future Challenges” , 2003.

Emily Watt, “A History of Youth Justice in New Zealand, Department for Courts” , 2003.

Henning, Kristin N., “What’ s Wrong With Victims’ Rights in Juvenile Court?: Retributive v. Rehabilitative Systems of Justice” , 97 Cal. L. Rev. 1107. 2009.

Mark s. Umbreit, “Victim meets Offender, Willow Tree Press, Inc. Monsey” , New York, 1994.

Payne v. Tennessee, 501 U.S. 808, 1991, p. 819; Erin Ann O'Hara & Douglas Yarn, “On Apology and Consilience” , 77 Wash. L. Rev. 1121, 2002.

Peggy Tobolowsky, “Victim Participation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Fifteen Years After the President's Task Force on Victims of Crime” , 25 N.E. J. on Crim. & Civ. Con. 21, 1999.

President's Task Force on Victims of Crime; Final Report, 1987.

Ministry of Justice, Restorative Justice: Best Practice in New Zealand, 2004.

Alaska Stat. § 12.61.010 (2006) (1997).

Conn. Gen. Stat. Ann. § 54-201 (2001) (1995).

Conn. Gen. Stat. Ann. § 46b-138b(2004) (1989).

D.C. Code § 16-2340(2008).

Fla. Stat. Ann. § 960.001 (2006) (1992).

Haw. Rev. Stat. § 801D-4 (2007) (1998).

Idaho Code Ann. § 19-5306 (2004) (1995).

705 Ill. Comp. Stat. Ann. 405/5-115 (2007).

Kan. Stat. Ann. § 74-7333 (2000) (1999).
 La. Rev.Stat. Ann. § 46:1841-45 (1999)(1992).
 La. Child. Code Ann. art. 811.1 (2004)(1993).
 Mass. Gen. Laws Ann. ch. 258B, § § 1-3 (West 2008)(1995).
 Mo. Ann. Stat. § 595.200 (2003).
 Nev. Rev. Stat. § 217.070 (2005)(1969, 1997).
 N.J. Stat. Ann. § § 52:4B-34 to -38 (2006).
 Okla. Stat. Ann. tit. 19, § 215.33 (2000).
 Or. Rev. Stat. § 419C.411(4)(e) (2007) (1995).
 Wash. Rev. Code Ann. § § 7.69.010-.050 (2007) (2004).
 Mich. Comp.Law Ann. § § 780.751-.775 (2007) (1988).
 N.C. Gen. Stat. § § 15A-824 to - 827 (2007).
 N.D. Cent. Code § § 12.1-34-01 to -05 (1997).
 Vt. Stat. Ann. tit. 13, § § 5301-5307 (1998)(1985).Ala. Code § 12-15-71 (1995).
 Alaska Stat. § 47.12.120(b)(4) (2006).
 Colo. Rev. Stat. § 19-2-919 (2008).
 Conn. Gen. Stat. § 46b-140(b), (d) (2004).
 D.C. Code § 16-2320.01 (2008).

2. 일본문헌

川出敏裕, “犯罪被害者に對する情報提供”, 『現代刑事法』, 10号, 2000.
 新倉修, “少年審判の情報公開と被害子の保護”, 『刑法雜誌』, 39卷3号, 2000.
 裁判所直員總合研究所監修, 『少年法實務講義安』, 司法協會, 2012.
 川出敏裕, 『少年法』, 有斐閣, 2015.
 法務委員会調査室 長嶺 陽一, “犯罪被害者等による少年審判の傍聴~少年法の一部を
 改正する法律案~”, 『立法と調査,議會』, 少年法(犯罪被害者關係)部
 会の要綱採択に関する会長談話(281), 2008.

3. 인터넷 검색

김남명기자, <https://news.v.daum.net/v/20210831183801764> , 2021. 8. 31. 국민일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 2021.

김소영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655664>, 2021. 11.15. 노컷뉴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1.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https://www.cppb.go.kr>). 2021.

박중석 기자, <http://www.nocutnews.co.kr/news/1028429?c1=191&c2=193>, 2013. 5. 1. 노컷뉴스.

서민선·윤준호 기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317266>, , 2020. 3. 28. 노컷뉴스.

성서호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81130135300004>, 2018. 11. 30. 연합뉴스.

손현규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3050751065>, 2018. 11. 23. 연합뉴스.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http://www.moj.go.kr/cvs/index.do>), 2021.

일본 法務省, 少年審判に関連する被害者支援(https://www.moj.go.jp/keiji1/keiji_keiji11-5.html), 2021.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http://www.mogef.go.kr/sp/hrp/sp_hrp_f004.do), 2021.

여성가족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http://www.mogef.go.kr/sp/hrp/sp_hrp_f003.do). 2021.

허시연기자, <http://www.civic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28>. 2021. 11. 25, 시빅뉴스.

〈논문요약〉

현재 소년사법절차는 ‘국친사상’이라는 이념의 실현과 ‘인권적 처우’라는 미명아래 피해자의 사법절차상의 정당한 권리보장보다는 가해소년의 중심의 불균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최근 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잔인한 양상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방안은 미비한 상황이다. 소년범죄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해자 중심의 소년사법절차와 정책이 소년범죄를 감소하게 하거나 예방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비행을 양산하고 있다.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한 미국의 경우 연방 주(州)의 대부분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재활’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강조하는 법령을 ‘처벌’과 ‘대중보호’를 강조하는 개정을 하여, 성인범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소년범죄 피해자도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의 증인 보호를 위한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의무 규정을 적용받아 피해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특히 재판의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피해자의 적극적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년범죄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을 하였으며, 피해자 등에 대한 기록의 열람 및 등사 범위 확대,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한 의견 청취 대상자 확대, 심판결과 통지제도, 심판의 방청 인정, 심판 후의 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전문적인 민간기관이 주도하는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사법절차인 가족집단회의를 운영하여 적절한 시기에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공감할 수 있는 화해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입법례에 긍정적인 측면을 도입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범죄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소년 사법절차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의 심리 기일 참석 허용, 진술권의 규정은 있지만 소년법이 각종 특칙 때문에 효능감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측의 심리기일 참석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진술권과 의견권을 보장을 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로 피해자의 보호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규정은 존재하지만 소년부판사의 결정에 따라 아주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을 때 심리기록의 열람·등사가 가능하

도록해야 하며, 민감한 신상에 관련된 심리기록 외에 비행사실과 관련된 기록을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심리개시 후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는 자를 보조인 뿐 만아니라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소년범죄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정보 접근과 제공이 차단된 것을 개선하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관련 정보, 심리개시의 여부, 심리의 기일·장소, 심판 결과와 결과 후의 처우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한다고 본다.

넷째,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화해권고의 단계가 법원 단계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소년부판사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화해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개선하여 가정법원판사의 일방적인 화해권고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화해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재판진행 중에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가정법원판사의 결정으로 화해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되, 유연한 화해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해 화해전문기관인 민간기관이나 개인·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가정법원심리의 경우 가해소년에게는 항고권의 지위가 있지만 소년범죄피해자에게 없다는 점을 개선하여 피해자의 진술권의 효능을 위해 불복수단인 항고권을 인정하여야 하며, 가해소년 측의 항고권과 같이 심리불개시 결정, 불처분 결정, 보호처분 취소의 결정에 대해 피해자 측의 항고권을 부여하는 적절하다고 보며, 특히 피해자 측에도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심리의 주체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본다.

여섯째, 성인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같이 소년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구조가 가능하도록 「소년범죄피해자보호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본다.